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번호 : H0-배전-기준-0014

개 정 번 호 : 34

개 정 일 자 : 2026. 10. 14

2000. 1. 1 제 정
2014. 11. 10 23차개정
2016. 9. 20 24차개정
2016. 10. 19 25차개정
2016. 12. 20 26차개정
2018. 10. 30 27차개정
2020. 10. 30 28차개정
2022. 10. 30 29차개정
2023. 11. 6 30차개정
2024. 1. 29 31차개정
2024. 10. 14 32차개정
2025. 9. 29. 33차개정
2026. 10. 14. 34차개정

작 성 자	최 진 혁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검 토 자	김 진 하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부장)
승 인 자	이 경 윤 (배전계획처장)

KEPCO 배전계획처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배전-기준-0014	
		개정·페이지	34	2/86
		제·개정일자	2026. 10.14.	

1. 구 분

① □ 제 정.

② ■ 개 정 (■ 일반개정, □ 간이개정)

2. 적용범위

① ■ 전사 적용

② □ 본사 적용 (특수사업소 포함)

③ □ 사업소 적용(부서명 :)

3. 운영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최진혁	최진혁	26.9.2	김진하	김진하	'26.9.2	이경윤	이경윤	'26.9.3

4. 관련부서 합의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상생조달처	처 장	김 성 효	김 성효	'26.9.22
안전혁신단	단 장	김 동 민	김동민	'26.9.9
배전운영처	처 장	곽 상 영	곽상영	'26.9.7
서비스혁신처	처 장	이 호 윤	이호윤	'26.9.8

5. 업무표준 주관부서 검토(ERP 등록시 준법경영실 합의결재선 자동지정)

6. 사규 관리부서 검토(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정보공개 및 제·개정 예고대상)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방목실장	최 인 식	적 정	26. 10. 12.

7. 일상감사(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일상감사팀장	최 명 환	적 정	26. 10. 14.

담당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최진혁(☎061-5221)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0	· 단가계약 최초시행 - 적용금액 : 100만원	-	-	-	1980. 3. 1 (시행일자)	제정
01	· 적용범위 상향조정 - 100만원 → 300만원	-	-	-	1981. 7.20 (시행일자)	1차개정
02	· 적용범위 상향조정 - 300만원 → 500만원	-	-	-	1986. 1. 1 (시행일자)	2차개정
03	· 입찰제도 보완 - 최저낙찰제 →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	-	-	1986.11.20 (시행일자)	3차개정
04	· 적용범위 상향조정 - 500만원 → 1,000만원	-	-	-	1989.12. 1 (시행일자)	4차개정
05	· 활선단가계약 신설 (1차사업소 단위)	-	-	-	1991.12. 1 (시행일자)	5차개정
06	· 1종, 2종, 활선단가계약 구분운영	-	-	-	1993. 1. 1 (시행일자)	6차개정
07	· 제2종 단가계약공사 신설 · 공사적용범위 확대 - 1,000만원 → 3,000만원	-	-	-	1994. 1. 1 (시행일자)	7차개정
08	· 무정전 단가계약공사 신설 - 67개 지역 / 1년계약 2회연장	-	-	-	1995. 1. 1 (시행일자)	8차개정
09	·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 (85% → 88%) · 적용대상공사 범위 확대 - 3,000만원 → 5,000만원 · 무정전공사 추가지역 선정 - 38개지역 / 2년계약 1회연장	-	-	-	1996. 1. 1 (시행일자)	9차개정
10	· 지중선단가계약 폐지 · 활선단가 4명 이상 활선작업조 편조 업체로 제한	-	-	-	1997. 1. 1 (시행일자)	10차개정
11	· 활선Ⅰ, Ⅱ급 및 무정전 단가계약을 "특수단가계약"으로 통합 · "제1종단가계약"을 "일반단가계약"으로 변경 · 계약기간 연장조항 신설 - 일반단가 : 1년계약 1년연장, - 특수단가 : 2년계약 2년연장	-	-	-	1998. 1. 1 (시행일자)	11차개정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12	· 단가계약 대상공사 구분 변경 - 일반, 특수, 2종 → 고압, 저압 · 지역분할 기준 변경 - 사업소 설비규모→ 공사실적	권태준	송원순	임정재	1999.11. 2	12차개정
13	· 고압, 저압 협력업체 분리 운영 · 계약기간 축소 운영 - 2년 단일계약 → 1년 계약 1년 연장	권태준	김지년	배승춘	2001.11.15	13차개정
14	· 협력회사 대상공사 축소 - 5천만원 → 2천만원 · 시공통보 제도 변경 - 지역전담제 → 업체별 순번제	권태준	김지년	박광식	2003.11. 3	14차개정
15	· 협력회사 대상공사 확대 - 2천만원→3천만원 · 연장계약 폐지 - 1년계약1년연장→1년단일 · 시공통보 제도 변경 - 업체별 순번제 → 순번제+지역전담제	이형근	심유종	김문덕	2005.11.17	15차개정
16	· 계약기간 증대 : 1년 → 2년(단일계약) · 저압 협력회사 수 산정기준 변경 - 사업소당 1개→추정도급액별 1~3개 ·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상향 - 고압 : 15.02억원→20~35억원	이형근	허창덕	최원수	2006.11.10	16차개정
17	· 협력회사 대상공사 확대 - 3천만원→5천만원 ·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상한 기준 상향 - 고압·지중 : 35억원→40억원	김대한	김병숙	장완성	2008.10.10	17차개정
18	· 협력회사 대상공사 범위 확대 - 고·저압 5천만원 → 8천만원 ·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상한 기준 상향 - 고압·지중 : 40억원→45억원	김기홍	최인규	권오규	2010.10.11	18차개정
19	· 표준문서 분류체계 정비 - 책임사항 조항 삽입 - 유효성 평가기간 명시조항 추가	임주혁	최인규	권오규	2012. 2. 3	19차개정
20	·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상한 기준 상향 - 고압·지중 : 45억원→56억원 - 저압 : 10.9억원→16억원	전인호	윤종륜	박형덕	2012. 10. 18	20차개정
21	· 협력회사 제재기준 완화 - 사망 1명(12개월 시공중지)→45일 - 무단작업(3개월 시공중지)→20일 - 일시고장(3개월 시공중지)→10일	전인호	윤종륜	하희봉	2012. 12. 31	21차개정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22	· 추정도급액 별 인원확보기준 상향 - 고압 : 7~11명 → 7~13명 - 지중 : 5~ 9명 → 5~11명 · 협력회사 제재기준 강화 - 중도해지(누계) : 10회 → 5회 - 사망 1명(45일 시공통보중지) → 180일	김진원	한명관	윤석열	2014.10.8	22차개정
23	· 협력회사 제재기준 완화 - 사망 1명(180일 시공통보중지) → 90일 · 선착공 범위 확대 - 선로순시 등에 의한 불량설비 보수공사 (전주 1개소 단위 200만원 이하)	김진원	한명관	윤석열	2014.11.10	23차개정
24	· 협력회사 추정가액 상향 - 고압·지중 : 56억원→63억원(저압 동일) · 협력회사 대상공사 범위 조정 - 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김진원	이준호	이수묵	2016.9.20	24차개정
25	· 협력회사 인력점검 기준 강화 - 연 2회(필요시 수시)→ 매월 2회 · 협력회사 인력 부적정 운영시 제재강화 - 1회 적발 : 시정경고, 2회 적발 : 계약해지	김진원	이준호	이수묵	2016.10.19	25차개정
26	· 고압정전 유발 협력회사 제재기준 변경 - 일시, 순간→ 일시, 순간, 순시	김진원	이준호	이수묵	2016.12.20	26차개정
27	· 협력회사 추정가액 상향 - 고압·지중 : 63억원→71억원 - 저압 : 16억원→20억원 · 협력회사 대상공사 범위 조정 - 3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현선배	조남기	김성만	2018.10.30	27차개정
28	· 협력회사→전문회사로 명칭변경 · 저압 전문회사 대상공사 확대 - 저압정전 복구공사 추가 · 보정금액(1일 평균 시공통보금액) 변경 - 사업소 동일→사업소별 산정금액	이순선	김종채 신 철	이건행	2020.10.30	28차개정
29	· 전문회사 추정가액 기준 상향 - 고압·지중 : 71억원→82억원 - 저압 : 20억원→25억원 ·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	이순선	김성민	정치교	2022.10.30	29차개정
30	· 안전사고 중 기타 부상 적용대상 명확화	김태욱	김성민	정치교	2023.11. 6	30차개정

제 · 개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31	· 안전사고 제재기준 개선 - 기타부상 제재기준 차등화 - 안전사고 은폐 및 보고지연 가중적용 일원화	김태욱	김성민	김재국	2024. 1.29	31차개정
32	배전 협력회사 체제 개편 - 전문회사(보수 4년), 협력사(신규 2년) - 고압 시공통보금액 상향(8천→1.6억원) - 지역전담제 금액 상향 등	허수용	김성민	김재국	2024.10.14	32차개정
33	· 사급자재 관리강화 · 보험료 사후정산 방식 변경 · 무정전장비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김수인	김진하	이경윤	2025. 9.29	33차개정
34	· 고압 협력사 - 시공통보 금액 상향(1.6억원→3억원) - 상근인력 통합, 안전관리 인센티브 강화 등 · 저압 협력회사 - 수행공사 확대(저압고장복구 추가) 등	최진혁	김진하	이경윤	2026. 10.14	34차개정

목 차

1. 목 적 8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8
3. 책임사항 9
4. 참고자료 10
5. 고압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운영 11
6. 저압 협력회사 운영 14
7. 협력회사 선정 15
8. 계약금액 산출 및 시공통보 25
9. 시공관리 28
10. 안전 및 품질관리 31
11. 준공검사 33
12. 하자보수 보증금 수납 33
13. 사후관리 34
14. 타절준공 39
15.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42
16.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43
17. 기 타 44
18. 유효성 평가 45
19. 별표 45

1. 목 적

이 기준은 배전공사의 적기 시공과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2.1 적용범위

2.1.1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16,000만원(전문회사) 및 30,000만원(협력사) 이하의 고압 배전공사와 8,000만원 이하의 저압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의 경우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한전 저압 협력회사가 아닌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2.1.2 다만, 재해 등 돌발정전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2.1.1'항의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선착공 통보할 수 있다.

2.2 대상공사 구분

2.2.1 고압 협력회사(배전 전문회사 및 배전 협력사) 수행공사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고압 배전설비 공사를 수행하며, 활선 또는 무정전 공사 등의 시공여부는 정전 감소효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부서장이 결정한다.

가) 배전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 : 긴급복구, 배전선로 이설 및 보수·보강 공사(수목전지, 건축용방호관 설치·철거 포함)

나) 배전 협력사(이하 협력사) : 신규 및 비설비설계 공사(점검, 측정, 수급지점 개폐 등)
단, 필요시 긴급복구 공사 선착공 통보 가능

다) 저압 협력회사와 고압 협력회사가 상호 합의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소 고압 협력회사가 해당 공사구역에서 발생되는 계기 관련공사(단전고객 재공급에 한함), 저압정전 복구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2.2.2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계기 관련공사, 계기유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시공, 인입선 정비 공사(인입용 전주시공 포함),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 공사, K-BEMS 유지보수 공사, 한전에서 지시하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및 「저압정전 복구공사 업무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저압정전 복구공사를 수행한다.

가) 사업소 내에 저압 협력회사만 단독으로 계약한 경우(울릉지사, 백령지사) 해당 저압 협력회사가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을 받고, 활선·무정전작업 수행이 가능한 전공 및 작업차량 등을 보유한 경우 고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활선·무정전 작업 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지역[별표8]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저압 협력회사 (이하 “도서 저압 협력회사”라 한다)의 경우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와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별표11]」에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다) AMI용 통신모뎀공사(모뎀 설치, 케이블 연결 등)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통신설비공 1명 이상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2.3 적용의 배제

2.3.1 공사의 시급성 또는 특수성 등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회사에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2.3.2 상기 ‘2.3.1’항에 의거 타 협력회사에 발주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은 공급자포털(KEPCO SRM)에 등재한다.

2.3.3 배전공사의 부대공사로 전기공사업 이외의 공사업 면허(조경, 통신), 폐기물 처리 등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별도의 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주 관 부 서	배전계획처장	·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및 운영 계획 승인
	배전건설부장	·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및 운영 계획 검토
	담 당	·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및 운영 계획 작성
협 조 부 서	상생조달처	·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
	배전운영처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 및 운영 · 저압고장복구 업무 및 저압협력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구 분	책 임	책임 사항
협 조 부 서	안전혁신단	· 배전공사 협력회사 안전관련기준 관리 및 운영 · 협력회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및 운영 · 협력회사 환경경영계획서 관리 및 운영
	기술기획처	· 협력회사 품질계획서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공사업체 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관리 및 운영
	영업배전시스템실	· 배전 협력회사 관련 영업배전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	·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 및 사후관리 · 부정당 시공 협력회사 제재(인센티브-패널티, 위약벌) ·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유발 기능인력 벌점 부과
	안전관리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및 이행여부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검토(반기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금액 회수
	품질담당부서	· 품질 및 환경 관리계획서 검토
	1차사업소 계약담당부서	· 협력회사 입찰 수행(낙찰예정자 결정, 계약체결 등) · 하자보수 보증금 수납 · 부정당 시공 협력회사 제재(중도 해지) · 계약해지, 안전사고 심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	· 협력회사 공사구역 운영 및 협력회사 수 결정 · 낙찰예정자 인원장비 실사 주관 · 협력회사 불법하도급 여부 등 점검 주관
	시공부서	· 협력회사 공사 활선 또는 무정전 시공여부 결정 · 협력회사 대상공사 시공통보 및 준공검사 등 수행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점검 협조

4. 참고자료

4.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계약업무처리기준

4.2 공사 및 품셈관리규정

4.3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4.4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4.5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

5. 고압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운영

5.1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 산출

고압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은 1차 사업소 주관으로 전문회사 및 협력사를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5.1.1 사업소 연간 발주예상금액

사업소별 최근 2년간('24~'25년, 최초계약일 기준) 배전공사 중 전문회사는 긴급공사 전체와 도급액(설계) 16,000만원이하 공사의 도급액(계약) 실적 합산치(VAT 포함)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협력사의 경우 도급액(설계) 30,000만원 이하 공사의 도급액(계약) 실적 합산치(VAT 포함)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고, '2.2'항의 공사유형에 따라 전문회사 및 협력사의 실적을 구분한다. 다만, 향후 추정도급액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력사업처장의 판단하에 발주 예상금액을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은 [별표17]에 따른다.

5.1.2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기준금액

구 분	전문회사	협력사
기준금액	48억원/년	41억원/년

5.1.3 공사구역 운영

고압 협력회사의 공사구역은 사업소(본부직할, 지사) 단위로 단독 운영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접사업소간 통합 공사구역을 운영한다.

가) 사업소 단독으로 공사구역을 운영할 경우 공사 발주물량이 과소하여 해당 협력회사의 수주 예상금액으로는 협력회사의 연간 운영·유지비용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사업소 연간 발주 예상금액이 '5.1.2'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소 단독으로 2개 이상의 협력회사를 운영하였을 때, 각 협력회사의 수주 예상금액으로는 협력회사 연간 운영·유지비용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기타 필요한 경우

※ 통합 공사구역 운영시 주요 고려사항

❶ (지리특성) 인접사업소간 이동편의성 및 소요시간, 유사 생활권 등

❷ (설비특성) 사업소 설비(가공, 지중) 및 공사특성

❸ (기　　타) 행정구역 통합, 전문회사-협력사 통합권역 간 일치여부 등

라) 통합 공사구역 운영시 협력회사 현장사무소에서 인접사업소 공사현장까지 장시간(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원거리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5.1.4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

가) '협력회사 수'는 '5.가.3)'항에서 산출된 공사구역의 총 발주 예상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협력회사 연간 추정도급액'은 총 발주 예상금액을 '협력회사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발주 예상금액(ⓐ) : 해당 공사구역을 구성하는 사업소의 연간 발주 예상금액 합
- 협력회사 수(ⓑ) = $\frac{\text{발주 예상금액(ⓐ)}}{\text{기준금액}}$ (단, 소수점 이하 절상)
- 협력회사 연간 추정도급액(ⓒ) = $\frac{\text{발주 예상금액(ⓐ)}}{\text{협력회사 수(ⓑ)}}$

나) '가)'항에서 구한 협력회사 수를 해당 공사구역의 입찰대상 공사건수로 하며, 연간 추정도급액에 계약기간(전문회사 4년, 협력사 2년)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대상 공사건의 추정도급액으로 정한다. (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반올림한다.)

다) 사업소 운영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필요시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5.2 고압 협력회사 전담지역 운영

공사유형별 추정가격(VAT 제외)이 '지역전담 기준금액' 이하인 공사에 대해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한다.

5.2.1 지역전담 기준금액 운영

가) 지역전담 기준금액은 공사구역 단위로 동일하게 운영한다.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반기 1회 이상 본부내 계약된 협력회사의 수주금액을 분석하고, 동일 공사구역내 협력회사간 편차를 분석한다. 이때 편차율이 10% 이상 또는 편차 3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전담 기준금액을 5백만원 단위로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나)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은 대표사업소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검토 후 필요시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는 [별표17]에 따른다.

라)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내용 및 기준일을 조정대상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영업배전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마) 공사유형별 지역전담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전문회사				협력사		
구 분	긴급공사주1)	배전선로 이설	보강공사	구분	신규공사	비설비 설계공사주2)
최초계약 ('25.1.1 ~)	전 공사 지역전담	5천만원	2천만원	최초계약 ('27.1.1 ~)	3천만원	2천만원
조정 상한금액		5천만원	3천만원	조정 상한금액	5천만원	3천만원

주1) 긴급공사란 돌발적인 상황으로 정전지역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한전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긴급하게 설비를 복구하지 않으면 정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행사 계획과 관련된 경우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를 지칭한다.

주2) 비설비설계란 설비 점검 및 측정, 수급지점 개폐 등의 부대공사를 의미하며 각종 측정 및 점검공사(활선기별점검 제외)는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한다.

5.2.2 도서지역 분할관리

비연륙 도서지역의 경우 공사지연 방지 및 신속한 정전복구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공사구역의 전문회사 또는 협력사에서 공사유형에 상관없이 해당 도서의 전체 배전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저압 협력회사 운영

6.1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 산출

저압 협력회사의 수 및 추정도급액은 1차 사업소 주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6.1.1 사업소 발주예상금액

사업소별 직전 2개년('24～'25년) 저압 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 이하 저압 배전공사의 총 준공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기준, VAT 포함) 합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공종은 아래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한다.

가) AMI 구축 계기 교체 공사와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나) 검정만료 전력량계 교체공사는 '27～'28년 교체 수량을 고려한 예상 도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다) 저압 정전복구 공사는 '25년도 저압 정전복구 공사 실적을 고려한 사업소별 예상 도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라) 도서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사업소의 경우 최근 2년간('24～'25년)의 도서 서비스센터 위탁공사 도급액을 합산한다.

마) 향후 추정도급액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력사업처장의 판단하에 발주예상금액을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은 [별표17]에 따른다.

6.1.2 저압 협력회사의 추정도급액 기준금액은 38억원/2년(VAT포함) 으로 한다.

6.1.3 저압 협력회사의 공사구역은 사업소(본부직할, 지사) 단위로 한다.

6.1.4 저압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

가) '저압 협력회사 수'는 '6.1.1'항에서 산출된 사업소 발주 예상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저압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사업소 발주 예상금액을 '저압 협력회사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발주 예상금액(ⓐ) : 사업소의 발주 예상금액
- 저압 협력회사 수(ⓑ) = $\frac{\text{발주예상금액(ⓐ)}}{\text{기준금액}}$ (단, 소수점 이하 절상)
- 추정도급액(ⓒ) = $\frac{\text{발주예상금액(ⓐ)}}{\text{저압협력회사 수(ⓑ)}}$ (단, 백만원 이하는 4사5입)

나) 저압 협력회사의 입찰대상 공사건수는 '가)'항의 저압 협력회사 수로 한다.

6.2 저압 협력회사 전담지역 운영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원 이하 다음 공사에 한하여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는 '5.2.1.마).주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저압정전 복구공사 업무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저압정전 복구공사는 8,000만원 이하로 적용하며, 휴일·야간은 공사구역 전체로 한다.

6.2.1 신규 인입선·계기부설공사

6.2.2 승압공사, 전압단일화공사

6.2.3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6.2.4 계기일반공사 : 계기교환, 계기철거, 해지, 재공급, 계기시험 등

6.2.5 AMI용 통신모뎀 공사

6.2.6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유지보수)공사

6.2.7 K-BEMS 유지보수 공사

6.2.8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구역의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공사

7. 협력회사 선정

7.1 입찰 집행

입찰집행은 전자입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 일정은 별도로 안내된 일정에 따르며,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부권역(8개) : 서울, 남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 남부권역(7개) :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7.2 입찰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공사구역을 포함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7.3 중복낙찰 제한

7.3.1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순으로 결정한다. 협력회사 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건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순번 후순위의 협력회사 유형 입찰건은 자동으로 제외한다.

7.3.2 동일 유형의 협력회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7.4’항의 입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당해 낙찰예정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따라 아래의 우선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가) 동일 공사구역 내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전담지역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나) 서로 다른 공사구역의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공사구역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다) 서로 다른 1차사업소(본부)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속한 1차사업소의 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라) 서로 다른 중점사업소 군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속한 중점사업소 내의 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마) ‘가)~라)’항으로 결정된 낙찰예정 공사건 외의 낙찰예정 건은 자동 제외한다.

7.3.3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 구분 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 공사 건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7.4 입찰시행방법

7.4.1 중점사업소, 1차사업소, 대표사업소 및 임무

가) 중점사업소 : 1개 특별시 또는 도내에 2개 이상의 1차 사업소가 있는 경우 본사에서 지정한 1차 사업소([별표7] 참고)

나) 중점사업소 임무 : 관리사업소 결정 및 관리, 입찰순번 부여, 중복낙찰 예정자 파악, 낙찰예정자 결정 등 관리사업소 임무를 제외한 업무 수행

다) 1차사업소 : 중점사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재지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라) 1차사업소 임무 : 해당 사업소의 입찰대상 공사에 따라 입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 대상자 결정, 적격심사, 적격심사 결과를 중점사업소에 제출, 낙찰자와 계약체결 업무수행

마) 대표사업소 : 통합 공사구역 운영 사업소에서 계약 당시 상위직제 사업소(공사구역을 단독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를 의미한다)

바) 대표사업소 임무 : 입찰 시 관리사업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 작성 등 계약의뢰, 적격심사, 인원·장비 실사 및 계약 후 사후관리를 담당(필요시 대표사업소 주관하에 통합사업소와 업무 동시수행 가능)

사) 통합사업소 : 통합 공사구역 운영 사업소 중 대표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

7.4.2 입찰순번 부여

가) 중점사업소는 해당 1차사업소의 입찰대상 공사건을 제출받아 대표사업소의 직제순에 의거 입찰순번[별표10]을 부여하고, 이를 1차사업소에 통보한다.

나) 입찰순번은 대표사업소의 직제순으로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 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7.4.3 입찰방법

가) 중점사업소 및 1차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시행한다.

①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대표사업소 담당 부서는 공종별 공사비 단가 및 설계기준에 의거 고압 전문회사는 추정가격 16,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고압 협력사는 추정가격 30,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저압 협력회사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의 서로 다른 가상설계서를

입찰대상 공사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한다. [각 건별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3조 ①항 1호의 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 및 2호의 금액(부가가치세)을 명확히 기재한다.]

② 계약부서는 각각의 가상설계서에 대한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 조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한 후 입찰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입찰공고, 입찰(개찰은 투찰 마감일 18:00~20:00에 시행하되, 건별 개찰간격은 충분한 시차를 두고 시행)을 집행한다. 단, 개찰 마감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 상황에 따라 20시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계약부서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일정 수의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다) 1차 사업소는 해당 업체로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은 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적격심사 결과표[별표9]를 작성하여 이를 중점사업소에 제출한다.

라) 중점사업소는 1차사업소 적격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중복낙찰 검토 및 입찰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차사업소에 통보한다.

마) 1차사업소는 중점사업소로부터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7.5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한전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7.6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및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7.6.1 보유인력 확보기준

가) 용어의 정의

① 상근Ⅰ 및 협력사 상근 인력은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제 배전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참여

하는 인력을 말한다. (상근Ⅰ 및 협력사 상근 인원의 공사 참여실적 확인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후 별도 안내)

② 상근Ⅱ 인력은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업계 자율적으로 고용(상근직) 및 운영하는 인력으로 직무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배전전공 이상의 자격 보유자로 고용하는 것을 권장)

나) **전문회사**는 하단에 정의한 상근Ⅰ 및 상근Ⅱ 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최소 확보 대상인원	
	총원	직무별 구성
상근Ⅰ	9명 이상	무정전전공 5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전공 2명 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
상근Ⅱ	9명 이상	공사관계자

① 무정전전공 및 배전전공의 자격기준은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른다.

② 전문회사는 일상적인 시공통보 공사 및 긴급복구 등의 선착공 공사의 원활한 운영 및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상근Ⅰ인력 중 상시 복구인력 4명 및 예비 인력 1명 이상의 무정전 전공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③ 상근Ⅰ인력 중 무정전전공 5명 이상의 인원을 변동하지 않고 지속 고용하는 경우, 대표사업소는 해당 전문회사에 '13.사후관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 **협력사**는 하단에 정의한 추정도급액 구간별 차등한 상근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추정도급액	최소 확보 대상인원 (상근인력)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계
30억원 미만	4명	2명	6명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4명	4명	8명
35억원 이상	4명	6명	10명

※ 단, 지중배전전공 2명 이상 필수 보유 (겸임가능)

① 무정전전공 및 배전전공의 자격기준은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른다.

② 협력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1년차 실적을 기반으로 2년차 추정도급액을 재평가 하여 추정도급액 구간별 최소 확보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보유인력 확보기준의 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협력사 필수인력 확보기준 조정]

■ **(주 관)**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

■ **(조정시기)** '28.1월

■ **(조정내용)** '27.1월 ~ 12월 발주실적 기반 상근인력 최소 확보기준 조정

- 협력사별 추정도급액 및 발주실적(계약도급비) 편차 분석, '28년 실적 예측, 인력기준 조정안 마련 및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상정

■ **(기타사항)** 기준인원 조정내용 및 기준일을 조정대상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력이 충원된 경우에 한하여 기능인력 실사 시행

- 실사와 관련한 세부 항목은「배전공사 인원·장비 실사 업무절차서」준용

라) **저압 협력회사**는 하단에 정의한 상근Ⅰ 및 상근Ⅱ 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최소 확보 대상 인원		
	배전전공	내선분야 전공	총원
상근Ⅰ	2 명	4 명	6 명
상근Ⅱ	공사관계자 2명 이상 상시 고용		

① 배전전공의 자격기준은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른다.

② 내선분야 전공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내선전공, 저압케이블 전공 등을 말한다.

③ 저압정전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저압 협력회사의 상근Ⅰ 기준인원은 「저압정전복구공사 업무처리 절차서」를 따른다.

④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상기 확보인원수 이외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별표11]」에 따라 상근전공 인원 수를 별도 산정한다.

마) 협력회사 대표자와 시공관리책임자는 '나)~라)'항의 상근 전공자격을 겸임할 수 없다.

7.6.2 장비 확보기준

가) 협력회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장비 및 공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전문회사 : [별표1] 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이상

② 협 력 사 : [별표2] 협 력 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이상

③ 저압 협력회사 : [별표3-1]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이상.
(단,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도서 서비스센터별 [별표3-2]의 장비[공구] 확보기준 이상의 장비 및 공구 추가 확보)

나) '가)'항의 장비가 공사수행 중 손망실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 즉시 교체, 수리, 보충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6.3 자재야적장 및 시설기준

가) 고압 협력회사는 300㎡이상의 야적장을 확보(임대, 협력회사간 공동사용 조건도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사용의 경우 각각 3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고압 협력회사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모든 협력회사는 사급자재 저장시 자재의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쉬운 입출고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해당 물자의 적절한 저장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모든 협력회사는 옥외보관이 부적합한 자재에 대하여는 옥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 및 자재보관 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도서 서비스센터별 주된 도서에 사무업무와 자재 보관 등이 가능한 현장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7.6.4 현장사무소

가) 협력회사는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당해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관할구역 안에 현장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나) 단,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도서 서비스센터별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별도 보유하고, 주된 도서지역 내 현장사무소를 별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7 인원 등 확인방법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낙찰예정자 결정 후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낙찰예정자를 대표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로 통보한다. 대표사업소는 통합사업소와 협의하여 통보받은 회사의 인원 등의 보유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 후 그 결과(적합 여부)를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계약부서는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해당 업체에 이를 통보한다.(계약 전 낙찰예정자 전국 동시 실사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7.7.1 상근전공(배전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내선전공)

상근전공은 낙찰예정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관련전공 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된 인원으로 한다. 단, 계약 전 전공자격 확인 시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른 시공능력 인증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다.

7.7.2 장 비

가) 각 품목별 기능, 동작상태, 수량 등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나) 보유장비 중 임대한 장비는 공증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공사용 차량은 영업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장비 실사일자는 중점사업소 단위로 동일일자에 시행한다.

라)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는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9.6’항에 의거 적합여부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7.7.3 야적장 및 현장사무소

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증을 받은 임대차(임대차 기간은 계약 이행기간 이상)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에 의해 확인한다.

나) 1개 야적장을 2개 이상 협력회사 또는 기타 회사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별로 일정 구획정리를 통하여 구분하여 자재관리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7.8 계약체결

7.8.1 계약부서는 기준에서 정한 인원 등을 확보한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인원보유 여부(상근Ⅰ,Ⅱ인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장비·야적장·현장사무소 확보 여부 및 계약 필수서류(타절준공 협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낙찰예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본 기준에 의한 인원, 장비, 야적장 및 현장사무소를 확보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비 실사일자는 중점사업소 단위로 동일일자에 시행한다.

7.8.2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7.8.3 입찰결과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예정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 발생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해당 공사구역의 협력회사 수가 1개인 경우(저압) 또는 다수의 협력회사 중 모두가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신규 협력회사와 계약체결 전까지 '25년도 기계약된 협력회사와 연장 계약하여 시공하되 시공통보 방법은 '25년도 배전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나) 해당 공사구역에서 다수의 협력회사 중 일부는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일부가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협력회사가 시공하되, 시공통보 방법은 '8.3'항에 따라 처리한다.

7.8.4 협력회사 낙찰예정자가 '7.6'항에 따른 낙찰예정자 구비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7.8.5 상위 입찰순번 공사의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위 입찰순번 공사의 기 통보된 낙찰예정자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리고,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공사의 차순위자가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 구분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7.8.6 기망적 인수합병에 의한 불공정거래 방지 및 계약체결 해지(해제) 가능

가) “기망적 인수합병”이란 한전 입찰참가 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회사가 합병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합병 무효의 소를 통하여 합병 이전의 상태로 회사를 분할하는 편법행위를 말한다.

나) 누구든지 기망적 인수합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합병 무효의 소가 확정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판결문 등 합병 무효의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망적 인수합병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는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7.9 계약 보증금

7.9.1 보증금 산출(추정계약금액 × 10%)

○ 추정계약금액 = 추정도급액 × $\frac{\text{낙찰금액}}{\text{추정가격(가상설계서 도급금액)}}$

주1) 부가가치세(분모, 분자) 포함

주2) 계약기간 중 추정계약금액 변경 시 추정도급액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추정도급액 = 일평균 시공통보액 × 총 계약일수
· 일평균 시공통보액 : 계약일부터 현재까지의 1일 평균 시공통보액
· 총 계약일수 : 계약기간 전체 일수

7.9.2 납부시기 및 방법

가)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나)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부서는 시공통보액을 확인하여 시공통보누계액이 계약체결시의 추정계약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에 추정도급액 재산정을 요청한다. 재산정된

추정도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추정계약금액이 계약체결시의 추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정된 추정도급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7.10 계약기간

7.10.1 협력회사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회사의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10.2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협력회사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당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계약 협력회사와의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서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8. 계약금액 산출 및 시공통보

8.1 단위공사 계약금액 산출

8.1.1 공종별 공사비 단가에 의거하여 산출한 단위공사 설계금액(A제외)에 공량단가율을 곱한 후, 공량단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A를 더하여 산정한다.

○ 공량단가율 $= \dfrac{\text{낙찰금액} - A}{\text{추정가격(가상설계서 도급금액)} - A}$

주1) 부가가치세(분모, 분자) 제외

주2) 소수점 2자리 미만은 절사

주3) A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의 합

8.1.2 계약기간 내 공종별 공사비 단가는 시중노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2 준공 정산금액 산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준공정산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8.3 시공 통보

8.3.1 협력회사가 유형별(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로 각 1개인 공사구역에서는 공사 유형에 따라 해당 협력회사에 일괄하여 시공통보 한다.

8.3.2 유형별 협력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 통보한다.

가) 시공통보 방법 및 순서

① '5.2'항 및 '6.2'항에 따른 지역전담 대상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을 전담하는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한다.

② '①'항의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시공통보할 공사건의 설계완료 후 협력회사 자동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유형별 협력회사 중 시공통보 누계금액이 가장 적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한다. 이 경우 최초 시공통보는 기입찰한 순번에 의거 시행한다. 단, 고장정전(저압정전복구공사 포함) 또는 차량충돌 긴급복구공사비와 공사업체 조달 지입자재비,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계기관련 신증설 및 계획공사 제외)는 시공통보 누계금액에서 제외한다.(단, 시공통보 누계금액은 준공 전에는 계약 금액을 반영하며, 준공이 완료된 공사건은 준공결재가 완료된 시점에 준공금액을 반영한다.)

나) 예외조치 사항

① '7.8.3.나)'항에서와 같이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8.3.7'항과 같이 기존 계약된 협력회사의 시공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시공통보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공사구역내 시공통보 가능한 동일 유형의 협력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협력회사에 '8.3.1~2'항에 따라 시공통보한다.

2) 공사구역내 시공통보 가능한 동일 유형의 고압 협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 공사구역 내 타 유형의 고압 협력회사에 '2.2.1'항의 공사유형에 상관없이 고압 배전공사 전체를 시공통보할 수 있다.

3) 공사구역 내 시공통보 가능한 동일 유형의 저압 협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 공사구역 내 고압 협력회사 또는 인접 공사구역의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할 수 있다.

② 협력회사가 한전에서 발주한 배전공사를 수행 중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서상 작업중지 범위와 무관하게 작업중지 명령 해제시까지 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할 수 있다.

1) 작업중지 명령 기간이 길어지거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기시공통보 공사건에 대하여 타절준공 후 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절준공 절차는 '14. 타절준공'에 따른다.

2) 신규 발생공사의 시공통보 방법은 위 '1)'항에 따른다

3) 작업중지 명령 해제시에는 해당 협력회사의 시공통보 누계금액을 공사구역내 동일 유형 협력회사의 평균 시공통보 누계금액으로 조정한다.

③ 하자보증에 따른 업체 선정시 시공통 보를 위한 누계금액은 착공일 기준 잔여업체의 평균 시공통보 누계금액으로 한다.

8.3.3 '5.2.2'항에 따라 도서지역을 분할관리 하는 경우 해당 도서지역의 공사는 해당 지역 협력회사에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시공통보하고, 해당 공사금액은 '8.다.2).가)' 항의 시공통보 누계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해당 협력회사에서 시공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새로운 협력회사가 선정될 때까지 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할 수 있다.

8.3.4 설비고장이나 긴급안전조치 등 긴급한 공사 및 선로순시 등에 의한 불량설비 보수공사(전주 1개소 단위의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경우 설비관리부서장(또는 비상근무내칙에서 정한 자)은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제59조에 의거 선착공 통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담지역의 전문회사에 우선하여 선착공통보하며, 필요시 해당 공사구역의 타 전문회사 및 협력사에 선착공 통보할 수 있다. 설비관리부서장은 복구공사 완료 후 즉시 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가) 야간 또는 휴일의 경우에는 협력회사 동원 소요시간 및 지리·계통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권역 내 타 전문회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사업소 자체 선착공 통보 방안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나) 해당 공사구역의 모든 협력회사가 긴급동원이 불가능한 경우 인접 공사구역의 타 협력회사에 선착공 통보할 수 있다.

8.3.5 태풍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는 신속한 설비복구를 위하여 지역전담제와 관계없이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 협력회사를 동원할 수 있다.

8.3.6 배전설비 운영상 협력회사 직원의 대기가 필요한 경우 설비관리부서장은 협력회사 대표(또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적정인력을 대기·배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3.7 기존 계약된 협력회사에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협력회사를 선정하여

야 하며, 새로운 협력회사가 선정될 때까지는 '8.3'에 따라 시공통보한다. 새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계약 잔여기간 추정도급액[추정도급액(2,4년)× $\frac{\text{계약잔여기간(일)}}{730\text{일},1461\text{일}}$]을 산정한 후 계약한다. 새로운 협력회사가 '8.3.2'항에 따라 시공통보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해당 공사구역의 동일 유형 협력회사의 시공통보 누계금액 평균금액으로 보정하여 적용한다.

9. 시공관리

9.1 책임시공

9.1.1 모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적정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책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표준시공 및 공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표준시공 및 공법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3.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책임자 주관하에 모든 공사 해당 공종의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공전 공정별 핵심 Check Point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공정의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상태를 공사감리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9.1.4 공사성격상(안전사고 우려 또는 무정전 공법 등) 중요 공정의 경우 공사 감리자 현장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1.5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를 최초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내역과 달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3.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9.1.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철거된 사급자재의 상태를 정확히 판정하고, 공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환입 처리한다.

9.1.7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13.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단, 저압정전 복구공사와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업무는 관련 절차서를 따른다.

9.1.8 전문회사 및 저압 협력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노·사 대표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非노조원으로 구성된 경우 고용인 및 피고용인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협력사는 필요시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다.

9.2 작업종사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에 소속된 유자격 전공(일용 포함)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른다.

9.2.1 배전 협력회사는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인증업체 관리 절차서의 시공인증 업체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선공사 : 무정전전공, 활선전공 또는 배전전공 자격소지자

※ 단, 특고압 가공케이블 종단·엘보접속재 작업은 '9.2.1).다)'항을 준용한다.

나) 활선 및 무정전공사 : 무정전전공 자격 소지자로서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상「시공능력」이 인증된 자에 한하여 투입가능

※ 시공능력 :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만족 ❶ 1년 이내에 무정전 공사 참여 실적이 24H 이상인 경우 ❷ 무정전 전공 신규 자격취득 또는 갱신일이 1년 이내인 경우 ❸ 1년 이내에 무정전 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에 합격한 경우

다) 지중공사 : 지중전공 자격 소지자로서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상「시공능력」이 인증된 자에 한하여 투입 가능

※ 시공능력 :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만족 ❶ 1년 이내에 지중배전 공사 참여실적이 40H 이상인 경우 ❷ 지중배전 전공 신규 자격취득 또는 갱신일이 1년 이내인 경우 ❸ 1년 이내에 지중배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에 합격한 경우

라) 신기술 대상 공사 : 한전이 정한 규정 또는 공문에 따른다.

9.2.2 배전 협력회사 소속 기능인력이 작업시행 중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였을 경우,「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업무절차서」의 조치 절차를 따른다.

9.2.3 협력회사 소속의 기능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력회사는 해당 내용을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영업배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9.2.4 절연버킷 또는 크레인을 활용하는 작업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보유 또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조종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9.3 공사시공

9.3.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설계내역, 한전 설계기준 및 시공편람을 기초로 공사를 시행한다.

9.3.2 공사시공 과정에서 한전의 사유로 소요자재 수급방법 및 설계수량 증감이 발생된 경우로서 시공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선착공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기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우선 시공하고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다.

9.3.3 착공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공사에 대하여 시공부서장은 부진사유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기 1회 전력사업처장(사업소는 지사장) 주관 공사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시행한다.

9.3.4 계약만료 연도 12월에는 협력회사로부터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준공(타절포함)에 대하여 계약 시 제출한 「타절준공 협약서[별표13]」 및 '14. 타절준공'에 따라 이월공사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9.3.5 장기 중지공사로 공사 중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공사를 준공 처리할 수 있다. 단, 배전선로 이설 공사의 경우 「배전선로 이설업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9.3.6 계약상대자는 현장시공 후 현장시공 완료일(설비별 사용개시일)을 입력하고, 준공검사과정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정(전선 접속개소, 접지저항 측정, 매설물·은폐물 시공과정 및 시공완료 상태 등)의 현장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9.3.7 절연스틱 작업의 신공종 적용 관련 기능인력 공법 교육 및 장비(공구) 확보 기준은 추후 별도 공문지시에 따라 시행 및 확보한다.

9.3.8 공사업체 조달자재는 한전 구매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12]의 6.조달기준 및 7.검수절차 및 구분에 따라 조달한다.

9.3.9 저압 협력회사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시공·자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업무를 처리하고, 계기 관련 공사로 철거된 AMI 통신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전기계기업무 기준 및 AMI 현장업무 절차서를 따른다.

9.4 고객관리

9.4.1 휴전작업 또는 변대단위 정전 작업 시 해당 고객에게 작업내용과 정전시간 등을 사전 안내하여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4.2 고압 휴전작업이나 민원발생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 감리자 현장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4.3 시공현장에서 민원 발생 시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하고 현장 상황을 공사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5 사급자재 관리

9.5.1 협력회사는 기신고된 야적장을 활용하여 사급자재를 인수인계 및 보관하여야 한다. 협력회사는 '7.6.3'항의 야적장 구조의 임의 변경 및 사급자재 저장위치 임의 변경 등 기신고된 야적장 외의 장소에서 사급자재 멸실 또는 훼손 발생시 해당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 및 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9.5.2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적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는 사전에 비정기 실사요청을 통해 야적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9.5.3 대표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비정기 실사요청 접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 「배전공사 인원·장비 실사 업무절차서」에 따라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시스템에 입력한다.

10. 안전 및 품질관리

10.1 안전관리

10.1.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대표사업소의 시공 및 안전관리부서에 착공전까지 영업배전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확인된 후 시공통보를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대표사업소의 안전관리부서는 반기 1회 이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행되는지 점검하고(시공관리부서 협조), 이행되지 않을 시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10.1.2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절차서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사고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발생된 긴급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야간 작업자의 피로감 및 부담감 완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1.4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유한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로부터 연 1회 이상(제작 후 10년 이상 경과시 또는 제작일 확인 불가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성적서 사본을 공사현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0.1.5 대표사업소는 계약상대자가 적합한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를 사용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10.1.6 대표사업소는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9.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부적합사항 발견시 '13.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시정조치완료 접수일까지 작업 중지를 지시한다.

10.1.7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속직원이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10.1.8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및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안전계약특수조건을 비롯하여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절차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Guide Book 등 상시 개정된 관련 절차서를 따른다.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다)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안전준수의무 위반시 제재·후속조치사항(계도서 3건으로 지도서 발행시, 위약벌 발행 대상건 중 도급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

라) 재해예방 기술지도(시공지시건별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경우 당사에서 계약체결)

마) 위험성평가 교육

바)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및 방호장치의 점검

사) 재해방지책임자 등 작업관리 관계자의 임무

아) 기타 그밖의 안전준수사항

10.2 품질 및 환경관리

10.2.1 계약상대자는 품질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0.2.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환경경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사업소의 환경경영 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0.2.3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 뒷정리(잔토, 잔재 등 처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2.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 통행인,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0.2.5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량, 예방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준공(기성)검사

11.1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사 준공 시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으로 준공(기성)검사보고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준공(기성)신고서에는 준공물자 기별조서, 준공도면, 공사비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시공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시행해야 한다.

12. 하자보수 보증금 수납

12.1 하자보수 보증금은 단위공사 준공정산금액의 2%로 산정한다.

12.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단위공사 준공인수일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2년(지중 및 배전철탑 3년, 전력구 토목부문 10년)으로 한다.

12.3 하자보수보증금 수납은 단위 공사별 최종 대가지급 시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추정계약금액에 대한 일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위 공사별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12.4 '7.자.2).나)'에 따라 계약기간 내 추정계약금액이 증액 된 경우 협력회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13. 사후관리

13.1 공사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3.1.1 인센티브 패널티 마일리지 제도

협력회사의 시공품질 및 안전분야 자발적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 항목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마일리지는 차후 우리회사가 발주한 배전공사의 적격심사시 가·감점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평가방법은 「배전공사 시공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를 따른다.

가) 인센티브 마일리지 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① 무정전 전공 고용 유지 (전문회사)	■ 전문회사 상근Ⅰ인력 중 무정전전공(5명 이상)이 1년간 인원 변동없이 지속 고용 및 작업 투입여부 확인 시	250 275 300	1년차 2년차 3년차
② 근로자 재해 대책	■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시	100	계약시
	■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시 주1)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상근Ⅰ 최소 확보 대상인원 이상	50	매분기
③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 본사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년 1회)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500	선정 시
④ 안전관리 위탁/선임	■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위탁 유지시	75	매분기
	■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유지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150	
⑤ 대표자 안전관리 활동	■ 협력회사 대표자 주관 현장 안전점검 - 자체점검 : 30점/건 주1) 재해방지책임자가 점검시작 QR을 전송하고, 30분 이후 종료 QR 전송건에 대해서만 인정(당일 안전점검 지적시 무효)	30 (최대 900/분기)	건
⑥ 장비 교체	■ 계약기간 내 장비, 공구의 신품 구매 및 교체 - 항목별 가점 : 절연버켓트럭(150),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75), 바이패스케이블(75), 공사용개폐기(50), 절연스틱 4종[핫스틱(10), 로터스틱(10), 핸드스틱(10), 그랩스틱(10)] 주1) 각 장비 및 공구별 규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별표1~3] 확보기준에 따름 주2)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10 ~ 150	발생 시 (건 당)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⑦ 정책 반영	■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최대 250	달성 시
⑧ 자율 안전관리 참여	ⓐ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 및 취득 주1) 안전관련 자격증 : 국가공인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50	건
	ⓑ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련 외부기관 안전교육 참여 주2) 외부 안전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20 (최대 100/년)	건 (4H 이상)
⑨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 계약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 및 사용	구매	사용	매분기
	▸관제용 이동형 CCTV	-	200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등 스마트 안전장치	70	100	
	▸에어백 조끼	50	75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CCTV, 바디캠(관제 미지원)	20	30	
	주1) 구매는 최초 1회만 부여하며, 사용은 매분기별로 부여 주2)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사용 가점만 부여(구매 가점 미부여) 주3) 당일 작업이 있는 공사들 중에서 1개 이상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항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적발시 해당 분기 사용 가점 미부여 주4) 관제용 이동형 CCTV는 협력회사 사무실에서 재해방지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만 가점 부여하며, 1대 추가 운영시 마다 100점/분기 가산. 주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는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시 경보가 울려야만 가점 부여 주6) 에어백조끼는 협력회사 상근 I 무정전전공 확보인원 이상 구매시 가점 부여			

나) 패널티 마일리지 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① 무단작업 또는 시공방법 임의 변경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무단 작업 또는 시공방법(간접활선 등 공법 변경) 임의 변경한 경우	500	건
② 대외민원 유발	시공지연, 부실공사, 기자재 관리 미흡으로 민원 유발 시 주1) 언론보도(인터넷, 신문 등), 대내·외 감사지적, 지자체 등 행정기관 시정 명령, 과태료, 시민재해(넘어짐,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등	300	건
③ 기능인력 부적정 운영	ⓐ 계약기간동안 기신고된 인원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기능인력이 상이한 경우 - 작업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능인력이 공사에 참여한 경우 - 작업통보서에 기능인력을 보통인부로 기재하고 현장에서 기능인력 자격의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협력회사에 소속된 기능 인력을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 월별 상근Ⅰ무정전 전공의 무정전공사 시공현장 참여율이 월 60% 미만인 경우	500	매 적발시
④ 필수장비 및 기자재 부적정 운영	ⓐ 계약기간동안 기신고 된 장비 및 야적장, 현장사무소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장비가 상이한 경우 ⓒ 협력회사에 소속된 장비를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500	매 적발시
	ⓓ 시공자재 임의변경 또는 사급자재 손망실이 확인된 경우	300	
⑤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위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 미상주 시	500	매 적발시
⑥ 지시 불이행	ⓐ 정책변경, 중점 요구사항 및 협력회사 수행공사 미 이행 ⓑ 사업소에서 참석 요청한 회의 및 교육 불참	100	건
	ⓒ 협력회사가 시공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1) 분기별 정기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결과, 협력회사측 사유로 인한 시공지연 대상이 5건 이상이고 전체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대상 공사의 10% 이상인 경우	300	매분기
	ⓓ 선착공 통보 후 협력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5시간 이내 작업현장 미도착 시	300	건
	ⓔ 선착공 통보 후 협력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2시간 초과하여 작업현장 도착 시	100	건
	ⓕ 고객응대 미흡, 정전복구지연 등으로 전기원 현장출동시	월최대 100	건
⑦ 중대재해 발생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시 ([별표16] 참조)	계약해지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⑧ 정전 유발	■ 작업중 또는 공사하자로 정전발생	일시정전(A~C등급)	700	발생시
		일시정전(D등급)	400	
		순간정전	300	
		순시정전	200	
⑨ 실사결과 부적합	■ 협력회사가 실사서류 미제출 및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500	건
⑩ 시공도면 불일치에 따른 계통변경 작업	■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통)도면과 현장시공 계통이 불일치하여, 계통변경 작업(번호찰 및 도면 수정 등) 추가 수행 시		100	건

13.1.2 위약벌

가) 불량기자재 사용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선로정전을 유발한 협력회사는 '13.1.1'항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1) 대상 : 공사시공 중(공사중지 포함) 또는 하자담보 기간 내의 공사로서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정전을 유발한 협력회사

(2) 위약벌 부과기준

구 분			위 약 벌	비 고
고압선로 정전발생	일시 정전	A등급	1,500만원/회	정전지속시간 5분이상 (일시정전 등급은 배전계통 공급신뢰도 관리기준에 의함)
		B등급	1,000만원/회	
		C등급	500만원/회	
		D등급	500만원/회	
	순간정전		200만원/회	정전지속시간 1분이상
	순시정전		100만원/회	정전지속시간 1분미만
변대단위 저압정전 발생			100만원/회	

나) 안전 준수 의무 위반 및 안전사고 등에 의한 위약벌은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고압선로정전 및 변대정전이 동시 2건 이상 발생된 경우와 고압선로정전 및 안전사고가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 항목 1개만 적용한다.

라)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1.3 조치사항

가) '13.1.1'항 및 '13.1.2'항 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5일 이내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별표6]" (또는 협력회사에 제재사실 통보 공문)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공부서(중도해지는 계약담당부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및 영업배전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나)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대표사업소 업무담당부서장(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1)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2) 위약벌을 부과하여야 할 사고가 공사비 지불 후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월에 지불되는 공사비에서 공제

(3) 공사비 지불 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4)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13.2 불법 하도급공사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하도급 여부, 기능인력, 장비, 자재, 현장사무소 보유현황 등 점검과 관련한 세부 항목은 「배전공사 인원·장비 실사 업무절차서」에 따른다.

13.2.1 확인책임자 :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 부서장

13.2.2 점검시기 : 반기 1회(필요시 수시 시행)

※ 인원 및 장비 최초 점검은 전국 동시('27년 상반기 중 본사 안내 예정) 시행

13.2.3 점검방법 : 현장실사

13.2.4 평가반원 : 확인책임자가 지정한 자

13.2.5 점검내용 : 협력회사의 하도급 여부, 기능인력, 장비 및 현장사무소 보유현황

가)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 리절차서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른 기능인력의 시공능력 인증여부

* (전문회사) 무정전 전공 지속고용 인센티브를 위한 상근 I 명단

나) 2개 이상 협력회사간 자재창고 및 야적장 공동사용 시 회사별 구분사용 여부

다) 사급자재와 협력회사 소유자재의 소유주체별 분리보관 실태

13.2.6 사후조치

가) 불법하도급으로 판명될 시 별도로 체결한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 에 의거 조치

나) 매 반기 전공별 임금지급, 장비·야적장 임대료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내역 등을 요청기일까지 한전 대표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제출시까지 '13.사후관리'에 따라 제재한다.

다) '5)'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13.사후관리'에 따라 제재한다.

14. 타절준공

14.1 용어의 정의

14.1.1 "타절준공" 이란 발주자의 사업계획이 변경(계약기간 종료 포함)되어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민원 또는 인허가 등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인정하고 당해 공사를 준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4.1.2 "타절선고" 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해 공사를 준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4.1.3 "기성고" 라 함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4.1.4 "기성고율" 이라 함은 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2 타절 준공 통보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은 배전 협력회사 계약 종료 전 미시공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 해당 협력회사에 타절준공 대상임을 안내하며, 아래 일정 순에 따라 진행한다.

일자	주체	내용	비고
D+0	한전	• 계약해지 누계벌점 도달일 또는 계약종료일 기준, 협력회사 미준공 내역 추출	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
D+2	한전 → 협력회사	•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률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	공문, 지정양식
D+7	협력회사 → 한전	• 개별 공사건의 시공률 확인 회신	공문, 송부양식
D+12	한전	• 시공률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	해당사업소
D+14	한전	•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본부
D+15	한전 ↔ 협력회사	•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	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

14.3 공사 타절준공 대상 선정

14.3.1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은 배전 협력회사 계약 종료-연도 11월 30일 기준으로 계약 종료 예정 협력회사의 시공통보 내역을 본부 주관으로 추출하여 각 사업소별 미준공된 공사 건의 시공이행계획을 협력회사에 요구한다.

14.3.2 협력회사는 미준공된 공사건별 시공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한전에 제출한다.

14.3.3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은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건별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 여부를 결정한다.

가) 당해연도 준공이 가능한 건은 “공사계속(준공)”, 당해연도 준공이 불가한 건은 “공사중지(타절)”, 현장 시공 미착수한 건은 “공사중지(취소)”로 구분한다.

나) 현장 시공률 판단 참고자료

유 형	현장 시공률	판정 기준	조치방법
① 현장 시공이 끝난 경우	시공률 100%	계속(준공)	1개월 이내 준공
② 부분 시공 후 중단	시공률 50% 이상	계속(준공)	건별결정
	시공률 50% 미만	중지(타절)	
③ 자재만 출고된 경우	시공률 0%	중지(취소)	자재 전량 환입 ⇨신규 협력회사 시공통보
④ 현장 미착공	시공률 0%	중지(취소)	시공통보 취소(환원) ⇨신규 협력회사 시공통보

※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개별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

다) 현장 시공률 산정 참고자료

유 형	점유비	판정 기준(복합공종)	비고
전주 건주	40%	건주수량 / 설계수량	• (시공/설계) x 점유비 ➥ ex1) 전주+전선 등 복합공종 - 건주 8기 / 설계 10기 = (8/10) x 40% = 32% ➥ ex2) 1개만 있는 단순공종 - 전선교체 500m / 설계 800m = (500/800) x 100% = 62%
전선 가선	35%	시공긍장 / 설계긍장	
기기류 신설	20%	시공수량 / 설계수량	
장주류(부속)	5%	시공전주 / 설계전주	

⇒ 전선교체, 기기 신설 등 1개 공종만 있는 경우는 점유비를 100%로 적용

※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개별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

14.3.4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은 '14.3.3'항에서 결정된 "공사중지(타절)" 대상 건을 협력회사에 통보하고 타절준공 합의서를 작성(상호 서명)한다.

14.3.5 "공사중지(타절)" 대상에 대하여 협력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건에 대한 협력회사 의견을 수렴한 뒤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사중지(타절)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대상 선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형	판정 방법
신규	• 고객 송전 일정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 시공통보까지 공사 진행 단, 송전 일정이 공사일정과 여유가 있을 경우는 중단(타절)
배전 선로 이설	• 전액 당사부담과 고객부담공사, 이설 긴급성에 따라 판단 - (전액 당사 부담)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 처리하여 준공 - (전액 또는 일부 고객부담) 기존 협력회사에서 시공 단, 전액 당사부담공사 중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이설이 긴급하여 공사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보수, 운영	• 공사타절 검토 시점의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준공처리 단, 위해개소 긴급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공사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14.3.6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는 [별표17]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타절준공 대상 건들은 해당 2차사업소 및 협력회사에 최종 통보한다.

14.4 계약해지 예정업체의 타절선고 대상

14.4.1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업체의 경우 미준공된 공사건별 시공 현장 시공률을 확인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한전에 제출한다.

14.4.2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은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건별 현장 시공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준공 공사건별 준공 방안을 결정·통보한다.

가) 현장 시공률 판단 참고자료

유 형	현장 시공률	판정 기준	조치방법
① 현장 시공이 끝난 경우	시공률 100%	계속(준공)	1개월 이내 준공
② 부분 시공 후 중단	-	중지(타절)	부분준공
③ 자재만 출고된 경우	시공률 0%	중지(취소)	자재 전량 환입 ⇨인근 협력회사 시공통보
④ 현장 미착공		중지(취소)	시공통보 취소(환원) ⇨인근 협력회사 시공통보

14.5 타절공사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14.5.1 준공 처리 : 배전 협력회사는 타절 준공 대상 공사건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준공을 완료하여야 한다.(개별공사 특성에 따라 합의한 경우 제외) 이때 사급 자재 중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는 환입을 원칙으로 하고 타 공사로 전용 시에는 계약해지 예정 업체가 아닌 타 협력회사의 공사로 대체하여야 한다.

14.5.2 준공 검사 : 시공 부서장은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한다.(현장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시스템 검수)

주 관	시공 부서
협력회사 담당차장	전력공급부(팀) 및 배전운영부(팀) 차장
• 시공내역 추출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 시공률 확인 • 검사자 임명 품의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14.5.3 대가 지급 :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해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실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급 자재가 협력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기성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4.5.4 선금 정산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공사계약 일반조건	선금정산	이자가산
[44조]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타절선고)	○	○
[45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타절준공)	○	X

※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15.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15.1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잔여 공사에 대한 이행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5.1.1 기시공통보된 공사의 경우 14. 타절준공에 따라 처리한다.

15.1.2 잔여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잔여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구 분	1년 이상	6개월 이상~1년 미만	6개월 미만
시공주체 선정방법	• 신규입찰을 통한 협력회사 재선정	• 신규입찰(재선정) or • 공사이행보증업체	• 공사이행보증업체
조치사항	• 업체선정 기간동안 동일 권역의 타 협력회사로 시공통보	• 2가지 방안 중 사업소장 결정	• 잔여 공사 이관

[※ 공사이행보증 제도]

✓ **(제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못 할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일정금액을 보증하는 제도

구 분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가입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필요서류	• 주계약서	• 주계약서 • 입찰공고문 사본 • 입찰참가현황 확인원 • 입찰참가자격심사 확인원 •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 보증업체별 필요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 **(보증기관이 선정한 계약이행업체의 자격)**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하자 책임의 범위)** 이행보증업체에 선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부여

✓ **(공사 실적의 인정)** 선행공사의 실적은 이행보증업체로 실적 부여

16.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계약상대자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다음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16.1 교육대상 : 재해방지책임자(사업주)

16.2 교육시기 : 연 1회

16.3 교육주관 : 본부 안전재난부 (CS교육 : 본부 고객지원부)

16.4 교육내용 : 정부정책 변화, 안전경영 정보, 안전관리기법, CS 등

17. 기 타

17.1 이 기준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공사계약 일반조건,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배전공사 공사업체 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배전운영실 운영기준, 작업안전수칙, 기타 공문 지시사항 등에 따른다.

17.2 배전공사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특수조건)”를 제출하고, 한전과 계약 상대자간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를 체결, 운영한다.

17.3 한전이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통보 방법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4 계약기간 중 신기술 적용대상 공사 설계반영 시 ‘9.3.1’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7.5 한전은 시공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에 의하여 재해방지책임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협력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재해방지책임자 등 교육 이수자는 소속 직원에게 교육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6 한전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사업소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사업소가 신설 또는 통합되는 경우, 시공통보 및 협력회사 운영방법 등은 사업소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7 한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시공지시 건별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보험료’)를 계상하되, 보험료는 준공대금과 별개로 반기 단위로 사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반기 단위 보험료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익월(매년 1.31, 7.31)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정산기간 동안 계상된 보험료 합산금액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합병 등 정산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내 보험료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27.1.1 이후 준공분부터 적용)

17.8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NDIS 및 ADMS 도면에 대한 보안관리 이행 의무가 있으며,

지리정보 취급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계약 시 [별표14]의 보안 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후 비공개, 공개 제한 지리정보가 표기된 각종(도면, 디스켓, CD 등)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한다.

17.9 보안위규 위반에 대한 사항은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및 지침 내 협력회사 보안관리 특수조건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상시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17.10 한전은 계약상대자에게 시공현장의 적정인력과 유자격 전공 투입 여부 등 협력회사 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7.11 협력회사 계약기간 내 시공통보 되어 계약기간 종료 후 진행되는 공사는 개별공사별 공법에 적합한 인력·장비를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지중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등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 유효성 평가

본 기준은 1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19. 별표

【별표 1】 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별표 2】 협 력 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별표 3】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별표 4】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고압 협력회사)
【별표 5】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저압 협력회사)
【별표 6】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
【별표 7】 중점사업소 명부
【별표 8】 도서 서비스센터 관할사업소 명부
【별표 9】 적격심사 결과표
【별표10】 배전공사 입찰순번
【별표11】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
【별표12】 배전공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별표13】 배전 협력회사 타절준공 상호 협약서

【별표14】 협력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별표1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별표16】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결정 절차

【별표17】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별표 1]

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1. 기본 장비·공구류

구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인정가능)	작업높이 15m 이상, 아웃트리거 인터록 및 동작 경보장치 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3이상
	2	오가크레인 또는 백호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3	카고크레인	3.5톤 이상 트럭,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4	화물자동차	1.0톤 이상 트럭,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장치	5	바이패스 케이블차 또는 장치대	22.9kV-y 3상4선식 배전선로 바이패스 케이블 운반, 포설용 - 원격(배전반) 조작, 케이블 얽힘 방지장치 - 3상동시 케이블감기, 풀기 기능 - 차량일 경우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5.1	바이패스케이블	22.9kV-y 3상4선식 배전선로에서 200m이상 바이패스 가능	Set	1이상
	5.2	공사용개폐기	바이패스 선로 개폐용(검상기능부)	대	3이상
	6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 (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인정가능)	22.9kV-y 3상4선식 단상 100kVA 3대 동시 교체 가능 - 결상 등 검상장치부 - 1,2차 개폐기부(배전반조작 가능) - 차량일 경우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Set	1이상
공구	7	절연스틱작업공구			
	7.1	절연스틱	핫스틱, 로터스틱, 핸드스틱, 그랩스틱 (동등 이상 기능 절연스틱 인정가능)	개	각2이상
	7.2	유압식 절단기	ACSR 32~240㎟ 용	개	2이상
	7.3	유압식 압축기	ACSR 32~240㎟용(10 ~ 13톤)	개	2이상
	7.4	전동공구	로터스틱 부착형	개	2이상
	7.5	보조암	절연버켓트럭 부착형	개	1이상
	7.6	전선인장기	인장강도 1ton이상	개	3이상
	7.7	점퍼선 고정공구	A, B, C형	개	6이상
	8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10톤 ~ 13톤 겸용 (아날로그식 또는 디지털식)	대	1이상

주1) 순번 1~6은 임대사용가능

- 영업용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장비의 중복임대는 불가
- 절연버켓트럭은 아웃트리거 인터록 및 동작 경보장치와 후방센서·카메라가 설치된 차량만 임대가능
- 보유 장비의 작업가능 높이 이상의 고소작업 발생 시 필요 장비 임대 사용

주2) 순번 5 바이패스케이블은

- '특고압 전선 체결용 클램프'는 '임시걸이' 가능 제품 보유시 인정
- 중간케이블과 개폐기 접속케이블의 총 길이가 900m이상 보유시 인정(3상 300m 기준)
- 케이블은 일반 배전선로 상시 운전용량 기준 내의 무정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비(보유 케이블 용량 부족 시 대용량 바이패스케이블 임대 사용)
- 기타 부속자재는 절연스틱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

주3) 위 기본 장비·공구류 외 활선·무정전 공법에 사용하는 장비·공구는 해당공법에 적합한 장비·공구를 반드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고 공사 시행(절연스틱작업 표준절차서 공종별 사용 장비 및 공구 참고)

주4) 순번 7.5는 절연버켓트럭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장비

주5) 순번 7.6은 절연스틱을 활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전선을 장악하여 전선인장이 가능한 공구

주6)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신호수 제외)는 반드시 무전기를 보유하여야 함

주7)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2. 지중공사용 장비 및 장구류

구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치	1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	펄스식 (맨홀 및 관로내 케이블 사활구분)	대	1
공구	2	전동식 압축기 (충전식 압축기 인정 가능)	13톤 ~ 15톤용	대	2
			25톤~30톤용 (유압기와 압축기헤드 중간압력 게이지설치)		1
	3	케이블 절단기	600mm 이상(전동식)	대	1
	4	케이블 피박기	반도전층용	대	2
			절연체용	대	2
	5	토오크 렌치	1" 820kg-cm (데드형개폐기BIP 조립용)	개	2
	6	지중기기 조작봉	절연스틱	개	3
	7	절연방전봉	AC 30kV급 이하	개	1
계측기	8	장력계	7.5 Ton	대	1
	9	지상기기용 상측정기	고압활선부 비접촉식 (엘보접촉식)	대	3
	10	저압용 검상기	저압케이블 검상용	대	2
	11	휴대용 누설전압전류계	저압 접속개소 누설전류 전압측정	대	1
	12	특고압용 검상기	7,000V이상 상 확인 시험용	대	1
	13	절연저항 측정기	5,000/10,000V겸용 400GΩ (특고압용)	대	1
			500V 1,000MΩ (저압용)		1
	14	검전기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3.3~35kV)	대	3
	15	용량성 검전기	AC 5~35kV	대	1
	16	가스탐지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용	대	1
기타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및 지상개폐기 부싱절연	개	각 6

주1)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는 전문회사 관할 구역내 지상기기가 250대 이상일 경우 필수 보유, 미만일 경우 필요시 임대

주2) 위 지중 공구·장구류 외 지중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공구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구·장구를 반드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여 공사 시행

주3)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별표 2]

협력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1. 기본 장비·공구류

구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다기능 무정전 고소 작업차량 인정가능)	작업높이 15m 이상, 아웃트리거 인터록 및 동작 경보장치 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장치	2	바이패스 케이블차 또는 장치대	22.9kV-y 3상4선식 배전선로 바이패스 케이블 운반, 포설용 - 원격(배전반) 조작, 케이블 얽힘 방지장치 - 3상동시 케이블감기, 풀기 기능 - 차량일 경우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Set	1이상
	2.1	바이패스케이블	22.9kV-y 3상4선식 배전선로에서 200m이상 바이패스 가능	Set	1이상
	2.2	공사용개폐기	바이패스 선로 개폐용(검상기능부)	대	3이상
	3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 (다기능 무정전 고소 작업차량 인정가능)	22.9kV-y 3상4선식 단상 100kVA 3대 동시 교체 가능 - 결상 등 검상장치부 - 1,2차 개폐기부(배전반조작 가능) - 차량일 경우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Set	1이상
공구	4	절연스틱작업공구			
	4.1	절연스틱	핫스틱, 로터스틱, 핸드스틱, 그랩스틱 (동등 이상 기능 절연스틱 인정가능)	개	각2이상
	4.2	유압식 절단기	ACSR 32~240㎟ 용	개	2이상
	4.3	유압식 압축기	ACSR 32~240㎟용(10 ~ 13톤)	개	2이상
	4.4	전동공구	로터스틱 부착형	개	2이상
	4.5	보조암	절연버켓트럭 부착형	개	1이상
	4.6	전선인장기	인장강도 1ton이상	개	3이상
	4.7	점퍼선 고정공구	A, B, C형	개	6이상
	5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10톤 ~ 13톤 겸용 (아날로그식 또는 디지털식)	대	1이상

주1) 순번 1~3은 임대사용가능

- 영업용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장비의 중복임대는 불가
- 절연버켓트럭은 아웃트리거 인터록 및 동작 경보장치와 후방센서·카메라가 설치된 차량만 임대가능
- 보유 장비의 작업가능 높이 이상의 고소작업 발생 시 필요 장비 임대 사용

주2) 순번 2 바이패스케이블은

- '특고압 전선 체결용 클램프'는 '임시걸이' 가능 제품 보유시 인정
- 중간케이블과 개폐기 접속케이블의 총 길이가 900m이상 보유시 인정(3상 300m 기준)
- 케이블은 일반 배전선로 상시 운전용량 기준 내의 무정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비(보유 케이블 용량 부족 시 대용량 바이패스케이블 임대 사용)
- 기타 부속자재는 절연스틱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

주3) 위 기본 장비·공구류 외 활선·무정전 공법에 사용하는 장비·공구는 해당공법에 적합한 장비·공구를 반드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고 공사 시행(절연스틱작업 표준절차서 공종별 사용 장비 및 공구 참고)

주4) 순번 4.5는 절연버켓트럭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장비

주5) 순번 4.6은 절연스틱을 활용하여 활선상태에서 전선을 장악하여 전선인장이 가능한 공구

주6)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신호수 제외)는 반드시 무전기를 보유하여야 함

주7)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2. 지중공사용 장비 및 장구류

구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치	1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	펄스식 (맨홀 및 관로내 케이블 사활구분)	대	1
공구	2	전동식 압축기 (충전식 압축기 인정 가능)	13톤 ~ 15톤용	대	2
			25톤~30톤용 (유압기와 압축기헤드 중간압력 게이지설치)		1
	3	케이블 절단기	600mm 이상(전동식)	대	1
	4	케이블 피박기	반도전층용	대	2
			절연체용	대	2
	5	토오크 렌치	1" 820kg-cm (데드형개폐기BIP 조립용)	개	2
	6	지중기기 조작봉	절연스틱	개	3
	7	절연방전봉	AC 30kV급 이하	개	1
계측기	8	장력계	7.5 Ton	대	1
	9	지상기기용 상측정기	고압활선부 비접촉식 (엘보접촉식)	대	3
	10	저압용 검상기	저압케이블 검상용	대	2
	11	휴대용 누설전압전류계	저압 접속개소 누설전류 전압측정	대	1
	12	특고압용 검상기	7,000V이상 상 확인 시험용	대	1
	13	절연저항 측정기	5,000/10,000V겸용 400GΩ (특고압용)	대	1
			500V 1,000MΩ (저압용)		1
	14	검전기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3.3~35kV)	개	3
	15	용량성 검전기	AC 5~35kV	대	1
	16	가스탐지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용	대	1
기타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및 지상개폐기 부싱절연	개	각 6

주1)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는 협력사 관할 구역내 지상기기가 250대 이상일 경우 필수 보유, 미만일 경우 필요시 임대

주2) 위 지중 공구·장구류 외 지중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공구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구·장구를 반드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여 공사 시행

주3)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별표 3-1]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구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주1~2)	작업높이 10m 이상,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 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공구	2	충전식 대용량 전선휴즈 압축기	2.6/3.2㎜, 22㎟~100㎟	대	1
계측기	3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보유한 압축기(2번)의 압축력 시험가능한 시험기	대	1
	4	접지저항 측정기	훅크온식	개	1
	5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	대	1
			500V, 1,000㏁	대	2
기타	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	대	3
	7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테블릿 PC	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	대	1대 이상

주1) 절연버켓트럭은 임대사용 가능

- 영업용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장비의 중복임대는 불가
- 절연버켓트럭은 인터록 장치와 후방센서·카메라가 설치된 차량만 임대가능

주2) 3.5t급 절연버켓트럭 및 1.2t급 소형 절연 버켓트럭(작업 가능 높이 10m 이상) 모두 가능(단, 3.5t급 중 버켓에 2인 탑승이 가능한 경우 동작경보장치 설치)

주3) 이 외 한전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명시된 시공법에 따른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별표 3-2]

도서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구분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주1]
장비	1	절연버켓트럭[주2]	작업높이 10m 이상,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 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공구	2	충전식 대용량 전선휴즈 압축기	2.6/3.2㎜, 22㎟~100㎟	개	1
계측기	3	접지저항 측정기	훅크온식	대	1
	4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0MΩ	대	1
			1,000V, 2,000MΩ	대	1
	5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보유한 압축기(2번)의 압축력 시험가능한 시험기	개	1
기타	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 이상(7시간 이상 지속)	대	2
	7	광학 쌍안경	루프식, 광학 10~11배율, 화각 60° 이상	대	1
	8	접지용구	특고압용 (22㎟이상)	조	2
	9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테블릿 PC	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	대	1대 이상

주1) 도서 서비스센터별 장비(공구) 확보 수량이며, 내륙지역에서의 장비(공구)확보 수량[별표 3-1]과는 별도임

주2) 절연버켓트럭은 임대사용 가능(별표 3-1의 주1), 주2와 동일)하며, 도서 서비스센터에 한해 절연버켓트럭을 대신하여 비절연 버켓의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차량을 접지하고,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 시행

주3) 서비스센터 소재 주 도서에 연륙교가 있는 경우 내륙지역과 절연버켓트럭 공용 가능

주4)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별표 4]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고압 협력회사]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대표자 :)

결재	시공부서	
	팀장	부장

NO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근 거
1	안전 카바류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2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3	부적격 전공 작업 투입	1회당 50점 감점		
4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5	전선공사시 연선로라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6	전주근입 미달 또는 근가 미시공	1개소당 50점 감점		
7	타시설물, 수목 등과 이격거리 미달	1개소당 30점 감점		
8	압축접속 불량(접속공법 미준수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9	전선이도 불량(2단장주 완철간격 부적정)	1개소당 30점 감점		
10	접지시공 불량(접지저항 미달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1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2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3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14	현장시공완료일 등록시 시공사진 미제출	1회당 30점 감점		

계	배 점	100점	감 점	점	평점	

① 공사건당 100점을 기준하여 현장감리, 준공검사 등 지적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하한치는 0점

작성일자 : . . .
작 성 자 : (인)

[별표 5]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저압 협력회사]

결재	시공부서	
	팀장	부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대표자 :)

NO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근 거
1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2	계기 오결선, 시험용단자 미접속	1회당 50점 감점		
3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4	계기지침 등 전산사항 입력누락 또는 착오입력	1건당 30점 감점		
5	봉인불량 수용발생(미봉인, 탈락)	1개소당 50점 감점		
6	시공불량으로 인한 인입선 접속 상태 불량	1개소당 30점 감점		
7	접지저항 또는 절연저항 측정 등 누락	1개소당 30점 감점		
8	선착공 공사 시공지체	1건당 50점 감점		
9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0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1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계	배 점	100점	감 점	점	평점	

① 공사건당 100점을 기준하여 준공검사, 현장 패트롤 등 지적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하한치는 0점

작성일자 : . . .

작 성 자 : (인)

[별표 6]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협력회사명 :

결재	시공부서	
	팀장	부장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4. 제재내용
   ○ 위 약 벌 부과_____원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협력회사대표자 성 명 : (인)
시공관리책임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별표 7]

중점사업소 명부

중점사업소명	1차 사업소	비 고
서울본부	서울특별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경기본부	경기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인천본부	인천광역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충북본부	충청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경남본부	경상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부산울산본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제주본부	제주본부	

[별표 8]

도서 서비스센터 관할사업소 명부

본 부	지 사	서비스센터	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
인천본부	강화지사	교동	교동도
		삼산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영종지사	북도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광주전남본부	여수지사	화정	백야도, 제도, 개도, 월호도, 자봉도,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사도, 추도
		남면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고흥지사	금당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
		금일	평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
	완도지사	노화·보길	노화도, 마삭도, 넙도, 후장구도, 마안도, 서넙도, 구룡도, 노록도, 보길도, 예작도 구도
		청산	청산도, 모도, 장도
		소안	소안도, 횡간도, 구도
	신안지사	비금·도초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도
		신의·하의	하의도, 대야도, 신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옥도, 신의도, 기도
		장산	장산도, 마진도, 백야도, 막금도, 섬막금도
경남본부	통영지사	한산	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용호도,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
		사량	사량상도, 사량하도
		욕지	욕지도,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연화도, 우도
제주본부	직할	우도	우도

[별표 9]

적격심사 결과표

공 사 명 :

관리사업소명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순위	상호	대표자	주소	적격심사 득점	비고

작 성 자(팀 장) : (인)

확 인 자(부 장) : (인)

[별표 10]

배전공사 입찰순번(예시)

□ 중점사업소명 :

순번	입찰대상공사	1차사업소명
1	'25년 OO본부 직할 전문회사	○○본부
2	'25년 OO본부 AA지사 전문회사	○○본부
3	'25년 OO본부 BB지사 전문회사	○○본부
4	'25년 OO본부 CC지사 전문회사	○○본부
5	'25년 OO본부 DD지사 전문회사	○○본부
6	'25년 OO본부 EE지사 전문회사 A지역	○○본부
7	'25년 OO본부 EE지사 전문회사 B지역	○○본부
8	'25년 OO본부 FF지사 전문회사	○○본부
9	'25년 △△본부 aa-bb 통합권역 전문회사 A지역	△△본부
10	'25년 △△본부 aa-bb 통합권역 전문회사 B지역	△△본부
11	'25년 △△본부 cc지사 전문회사	△△본부
12	'25년 △△본부 dd지사 전문회사	△△본부

[별표 11]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내륙 배전선로가 연계된 도서 서비스센터의 배전설비를 관리하는 저압 협력회사(이하 “도서 저압 협력회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과정과 업무확인 방법을 정하고,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전설비 예방보수 및 전기고장 복구 등 배전선로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공사 범위

2.1. 위탁공사 대상

도서 서비스센터 관내의 저압 고장처리, 배전선로 순시 등 모든 위탁공사 대상 작업은 2인 1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배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1.1 저압 고장처리 및 저압 고장 출동대기

2.1.2 배전선로 순시·점검 및 측정(접지저항, 표본전압, 변압기 부하) 업무

2.1.3 일상보수 업무(선로순시 결과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시행, 활선작업 제외)

가) 수목전지(사선구간 및 저압측에 한함), 이물제거, 저압 유휴설비 철거

나) 저압선, 인입선, 지선, 도색판, 번호찰 정비

다) 접지개수, 불평형 시정, COS 조작 및 휴즈링크 교환(긴급작업 등 필요시)

라) 설비 현장조사 등 기타 보수작업(고압 제외)

2.1.4 영업일반 업무

가) 고압고객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긴급작업 등 필요시)

나) 휴지, 해지, 불량계기 교체, 단전·재공급

다) 고객 불편사항 중계, 위약사항 중계 등

2.1.5 긴급작업

가) 배전선로 고압고장 시 선로순시 및 수동 개폐기 조작

※ 사선상태가 명확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대리인 관리 하에 점퍼선 분리 등 고장구간 분리 가능

나) 중계표, 고장접수 사항 중 작업자 또는 일반인의 안전사고가 우려(예상)되는 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치

2.1.6 기타 계기관련 신증설 및 계획공사(검정만료 계기교체, AMI 구축 계기교체, 계기함 교체) 등 한전의 시공통보 사항 중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협의 후 시행 가능한 공사

2.1.7 위해개소 현장안내 및 통제, 현장상황 한전 통보

2.2 위탁공사 제외

2.2.1 특고압 배전계통 운영

가) 배전선로 부하전환 업무(활선상태의 수동개폐기 조작 포함)

나) 고장구간 분리(활선 응급조치)

다) 긴급 활선업무(특고압 근접 수목전지 포함)

2.2.2 설비진단 업무

가) 배전설비 진단 업무(초음파, 열화상 진단)

나) 지능화개폐기(단말기), SVR 점검

다) 무선부하 감시시스템 이설

2.2.3 중요행사장 전력확보

2.2.4 고압고객 파급고장 시 고객설비 점검 및 안내

2.2.5 사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옥내설비 점검 및 지원

2.2.6 배전선로 신증설 및 배전선로 이설공사(차량충돌 복구공사 포함)

2.2.7 배전선로 경상 및 계획보수공사

2.2.8 고압고장 복구(단, 사선상태의 긴급 임시복구 제외)

3. 도서 저압 협력회사 선정

3.1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 및 현장사무소를 내륙지역과 별도로 도서 서비스센터별로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3.1.1 도서 서비스센터별 상근전공 확보기준

구 분	확보 대상 인원		
	배전전공	내선분야 전공	계
상근Ⅰ	2 명	1 명	3 명
상근Ⅱ	공사관계자 1명 이상 상시 고용 (배전전공, 시공관리책임자, 내선전공, 안전관리보조 등)		

가) 도서 저압 협력회사의 기술인력 확보인원 수는 도서 서비스센터별로 별도 산정한다.

나) 상근Ⅰ인력은 비상상황 대비 필수유지 대상이며, 상근Ⅱ인력은 안전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필요인력을 말한다. 단, 2개 이상의 도서 서비스센터를 담당하는 도서 저압 협력회사의 경우 직무별 필요인력(상근Ⅱ)을 1명 이상 확보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A'도서 저압 협력회사에서 'B'서비스센터와 'C'서비스센터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직무별 필요인력을 1명만 확보하여 공동운영 가능)

다) 도서 서비스센터의 배전전공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1.2 장비 보유기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도서 서비스센터별로 장비 및 공구를 구비(권고장비 제외)하여야 한다.

3.1.3 현장사무소 보유기준

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도서 서비스센터별 주된 도서에 사무업무와 자재보관 등이 가능한 현장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확보한 현장사무소에는 작업통보용 팩스, 유선전화 등 연락망을 구비하여야 하며, 저압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대리인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3.2 인원 등 확인방법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근전공 및 장비, 현장사무소 확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는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증을 받은 임대차(임대차 기간은 계약 이행기간 이상)또는 공동사용 계약서에 의해 확인한다.

4. 장비, 자재 운영

4.1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선로순시, 통상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표3-2]의 장비(공구)를 도서 서비스센터 관내에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 시 해당 보유 장비(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도서 저압 협력회사의 도서 서비스센터 작업차량에는 차량 전면 또는 적재함 측면에 “한전 협력회사 00전력” 등으로 협력회사명을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복 착용 시에도 “한전 협력회사 00전력”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4.3 도서 서비스센터 관내에서 사용하는 사급자재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도서 저압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며 인도 후의 운송비는 도서 저압 협력회사가 부담한다.

4.4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도서 서비스센터의 보관자재는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자재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현장대리인의 관리 하에 보수자재 관리대장(별도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자재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5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서 서비스센터 관할 타 지역 도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임대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선박 이용 시 선박용선료는 실적급으로 정산 시 계상한다.

5. 위탁업무 절차

5.1 배전선로 순시 및 점검 업무

5.1.1 배전선로 순시

배전선로 순시는 “배전선로 검사기준” 6.2항(자율검사)의 “순시”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설비		내 용	권장주기	비 고
공중	특고압	선로 시설상태 및 주변환경 등	1개월	특별순시 별도 (조류등지순시 등)
	저압		2년	
지중	특고압		1개월	
	저압		분기	

가) 순시방법

① 개략적인 설비상태와 선로주변의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중점 순시한다.

② 선로순시는 설비의 현장여건에 따라 차량 또는 도보순시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순시 횟수는 설비의 노후도, 고장발생빈도, 기상여건, 설비상태, 계통의 중요도, 조류둥지 조성빈도 등에 따라 한전 업무담당자와 현장대리인이 협의하여 증감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순시조는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1명은 작업상 위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⑤ 선로순시 시행 전 광학장비, 개인용공구 및 안전장구, 간이수리용 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순시결과 통보 및 조치사항

① 순시결과는 순시결과 통보서(별도양식)에 상세히 기록한다.

② 순시결과 이상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현장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하되, 긴급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한전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탁회사 순시결과 통보서는 매월 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설비관리부서로 제출한다.

다) 기타 선로순시와 관련된 사항은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따른다.

2) 설비점검 및 측정 업무

선로순시를 통하여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설비의 상태 또는 부분을 세심히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광학장비 등을 사용하여 설비점검을 시행하고, 배전설비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하여 측정업무를 시행한다.

가) 배전설비 점검 및 작업 시에는 관련 점검장비와 불량설비 교체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 등을 준비한다.

나)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즉시 보수하고, 현장보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업무협의 후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규정전압, 접지저항, 변압기 부하량 등 필요시 배전설비에 대한 측정업무를 시행한다.

마) 기타 설비점검 및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따른다.

5.1.3 고장처리 업무

가) 배전설비 고장개소는 재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송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안전 및 배전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치 후 송전할 수 있다.

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배전설비 고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자체 인원보강 등을 통해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다) 불시정전 등 비상시 대비 현장대리인은 한전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작업자에게 비상대응 업무를 한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나. 시공관리

5.2.1 위탁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적정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책임 시공(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모든 위탁공사(작업)는 2인 1조 이상의 인원으로 수행함이 원칙이며, 전주 위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절연버켓트럭(비절연 버켓의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차량 접지, 개인안전장구 착용)을 사용하되, 차량진입이 곤란한 개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대(그네식, 벨트식)와 죔줄(주죔줄, 보조죔줄) 등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전주 인력오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전주 인력오름 작업을 전·후하여 반드시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그 즉시 한전 업무담당자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2.3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매일 작업내용(배전설비 보수, 고장처리, 영업일반업무 등)을 소정 서식에 의거 통보한다.

5.2.4 휴전작업 또는 변대단위 정전 작업 시는 해당 고객에게 작업내용과 정전시간

등을 사전 안내하여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2.5 작업 현장에서 민원발생 시 고객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원상황을 현장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6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정(전선 접속개소, 접지저항 측정치, 매설물 설치등)은 현장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2.7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철거된 사급자재의 상태를 정확히 판정하고, 설비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환입 처리한다.

5.2.8 계약상대자는 선박용선 시 증빙자료(출발·복귀 시 선박배경 사진 및 업무수행 현장 사진)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안전 및 품질관리

5.3.1 도서 저압 협력회사 작업자는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3.2 도서 서비스센터 관할지역에서는 저압정전 복구 등을 위한 일몰 이후 야간 전주 인력오름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광역정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주 인력오름을 시행하되, 관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3.3 기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0항에 따른다.

6. 기 타

이 기준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공사업체 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선로 검사지침, 기타공문 통보사항 등을 따른다.

[별표 12]

배전공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1. 목 적

공사업체가 조달하여 시공한 배전기자재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전기자재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책임

2.1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적용범위는 공사업체에서 조달하여 배전선로에 설치하는 배전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공사업체는 공사 결과물에 하자 발생시 하자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결과물의 재료인 공사업체조달품목 불량으로 인하여 공사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배전기자재”라 함은 배전선로를 구성하는 기계 · 기구 · 장치 · 구조물 등 설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품과 물자를 말한다.

3.2 “하자”라 함은 공사업체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배전기자재중 제조회사의 설계 및 제작과정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품질 또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3 “하자교체비용”이라 함은 하자품 교체에 소요되는 교체비용(공사비, 운반비)에 대하여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3.4 “하자보상”이라 함은 하자품에 대하여 공사업체가 수리납품, 대체납품 또는 현금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5 “주관부서”라 함은 이 지침을 관리 및 운영하는 본사 기술기획처를 말한다.

3.6 “운영부서”라 함은 공사업체에서 조달하는 배전기자재를 사용하여 준공한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소 해당부서를 말한다.

3.7 “공사업체조달품목”이라 함은 공사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전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말한다.

3.8 “검수자”라 함은 공사업체조달품목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업체(별도의 감리가 선임된 경우 상주감리원)을 말한다.

4. 임 무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1 주관부서

4.1.1 하자지침 관리 및 운영

4.1.2 하자판정 분쟁시의 하자여부판정

4.1.3 하자수리품의 시험검사기준 검토

4.1.4 하자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4.2 운영부서

4.2.1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

4.2.2 하자발생시의 보고 및 공사업체 통보

4.2.3 하자품의 판정

4.2.4 하자품의 공사업체 인도

4.2.5 하자보상품의 수령

4.2.6 산출한 하자교체비용 청구분 수납부서(자재담당부서) 통보

4.2.7 업체 인도 하자품의 보증금 수납부서(자재담당부서)로 통보

4.2.8 하자품의 보상 입금의 수납부서(자재담당부서)로 통보

5.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2. 나(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규정에 의해 단위공사 준공인수일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2년(지중 및 배전철탑 3년, 전력구 토목부문 10년)으로 한다.

6. 조달기준

공사업체조달품목은 소요물자의 재고가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업체조달업무처리기준 제5조(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그 품목의 성질, 수량, 사용장소, 납기 및 구매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사업체로 하여금 조달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7. 검수절차 및 구분

7.1 검수절차

공사업체조달물품의 검수는 해당 공사업체에서 1차 검수를 시행하고 공사업체조달물자명세서를 작성 날인한 후 검수자(별도의 감리가 선임된 경우 상주감리원)가 공사업체조달물자명세서에 따라 검수를 시행하고 검수일자, 합격표시와 검수자 날인을 한다.

7.2 검수의 구분

7.2.1 공사업체조달물품의 검수는 외관 및 수량검수와 시험검사로 구분한다.

7.2.2 검수자는 외관 및 수량검수를 시행하고 별도의 시험을 요하는 물자는 시험항목을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7.2.3 외부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였을 때의 시험료는 공사업자가 부담한다.

7.2.4 성능시험은 국가승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7.2.5 KS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안전인증품목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7.2.6 공사업체 조달자재 인증회사 POOL에 등록된 업체의 납품자재는 제조사 품질보증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품목은 단가계약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시험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8. 하자발생일

하자발생일은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발생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 발견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9. 하자판정

9.1 운영부서는 고장 또는 불량 기자재에 대하여 하자발생 당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사항을 충분히 조사한 후 공사업체 조달품목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2 운영부서는 하자 발생시 공사업체의 불복 또는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본사의 주관부서, 설비진단센터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하자로 판정 시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9.2.1 운반, 설치 및 취급 부주의에 따른 당해 기자재 손상 또는 변형여부

9.2.2 하자발생 당시의 기상상태

9.2.3 각종 보호기기류 동작상황

9.2.4 고장당시 운전상태(부하, 계통변경사항 등)

9.2.5 관련자료(사진, 도면 또는 필요시 실물) 및 기타 참고자료

10. 입력 및 관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발생시 하자입력, 하자확인요청서 발행 및 결과보고 등은 하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11. 하자통보 및 보고

11.1 운영부서는 공사업체조달품목의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하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자확인요청서를 출력하여 공사업체에게 통보하며, 이를 15일 이내에 확인토록 한다.

11.2 공사업체는 한전의 하자확인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공사업체 조달품목의 하자로 판정된 경우 하자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 운영부서는 하자로 인정된 경우 하자발생보고서 및 하자처리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2. 하자로 인한 비용부담

12.1 하자품의 교체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12.1.1 공사비 :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 철거 및 신설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12.1.2 운반비 : 발생장소에서 인도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우리공사 수송요율에 의거 산출한 왕복운반비로 한다. 다만, 현장수리 또는 현장에서 제조업체에게 직접 인도 시는 제외한다.

12.2 하자로 인한 사고 등에 의하여 우리공사 또는 공사업체에 제기된 소송 등에 의한 보상 또는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12.3 공사업체는 공사업체 조달품목의 하자로 인한 정전으로 우리 회사에 전기판매 손실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전기판매 손실금액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전기판매 손실금액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본요금 : 1시간 이상 정전고객의 기본요금×정전시간/720시간(24시간×30일)
- 전력량 요금 : 지장전력량×[전월판매단가(전력량요금)-전월구입단가(CP제외)]

13. 하자보상 요청 및 반출

13.1 운영부서는 하자 통보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업체에게 하자품의 하자보상을 요청하여야 한다.

13.1.1 하자발생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3.1.2 하자보상요청 및 반출에 관한 사항

13.1.3 기타 필요한 사항

13.2 하자보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작 또는 수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자품 인도 전에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3 공사업체가 하자보상기간 내에 보상치 않을 시는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하자보수비용 등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품을 수리 또는 신품으로 대체한다. 다만, 이 경우 하자보수비용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상품의 납품

14.1 하자품은 수리하여 납품하거나 동일규격의 신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보 시점의 우리공사의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구매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다.

14.2 동일 품목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기자재를 대체 납품할 수 있다.

14.3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에는 해당사업소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4 공사업체는 하자 보상품을 납품할 때에는 13. 가항의 하자품의 교체 또는 대체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상품의 검수

15.1 하자보상품은 신품 납품시와 동일하게 검사를 시행한다.

15.2 하자보상품의 납품과 관련한 별도 검사료가 수반될 경우 시험검사료는 공사업체가 부담한다.

16. 기 타

관련부서는 하자발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 해소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배전 협력회사 계약기간 종료 후 타절준공 상호 협약서】

사업소명 : ○○본부 ○○지사
계 약 명 : '25년도 ○○본부 ○○지사 협력회사 A지역 (계약번호)
계약기간 : 2025. 1. 1. ~ 2026(2028). 12. 31.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기간 동안 시공통보를 받은 공사 중 계약종료일 이후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공사에 대해 적절한 유지관리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타절준공 대상선정)
①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계약종료 해 11월 마지막 영업일에 미준공 공사에 대한 공사일정을 협력회사에 요청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사일정을 확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시공완료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타절준공을 원칙으로 아래의 각호를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확정한다.
가. 계약기간 내 준공, 시공완료 가능, 시공완료 곤란 공사내역
나. 시공완료가 곤란한 공사의 경우 시공 및 미시공 범위를 구분하되, 지지물 또는 구조물의 선로번호를 기준으로 산정
③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협력회사가 제출한 시공완료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협력회사와 타절준공 대상공사 및 잔여구간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협력회사로 통보한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 한전에서 통보한 타절준공 대상공사가 현장여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타절준공 대상공사 또는 잔여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타절준공 처리)

① 협력회사는 타절준공 처리가 확정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만료년도 12월 31일까지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만 준공 처리하며, 한전에서 지급한 사급자재 중 시공 후 남은 자재와 철거한 자재는 자재센터로 환입하거나 차기 협력회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차기 협력회사로 인계할 경우 인계물량과 인수자의 확인을 득한 인계인수서를 한전에게 제출하며, 한전은 해당 내역을 시스템(저압 협력회사는 시공·자재관리시스템 활용)에 등록한다.

제4조(하자책임) 협력회사는 타절준공 대상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한 구간에 대해서만 하자책임을 가지며, 하자책임 기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2.2항에 따른다.

제5조(관련법령의 준수)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한전과 협력회사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상기 ①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또는 관할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

제6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한전 및 협력회사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성립한다.

제7조(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전과 협력회사가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2월 00일

발 주 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
대리인 ○○지사장 ○○○ (인)

협력회사 : ○○ 대표이사 ○○○ (인)

[별표 14]

【협력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사 업 소 명 :
공사·용역명 :

1.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위 공사·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협력회사 보안조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협력회사 보안조치 사항]

■ 한전 배전도면(NDIS 및 ADMS) 파일 : 삭제
☞ 공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파일 암호화 보관
☞ 파일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 : 한글, 엑셀 등에 붙여넣기 하여 암호화 설정
※ 파일 암호화 비밀번호 : 숫자, 문자, 특수문자 포함 12자리 이상
■ 한전직원 및 고객정보 파일 : 암호화 보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 공사·용역 관련 서류 :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업로드 및 게시 금지
■ 업체 자체 운영중인 파일 공유 서버(FTP/NAS) : 비밀번호 설정 및 접근 통제 철저
■ 네이버 등 상용메일로 한전자료 전송 시 : 파일 암호화
■ 공사·용역 준공, 계약 종료 시 한전 도면, 직원 및 고객정보 등 중요자료 완전 폐기

2. 본인은 위 보안조치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확 인 자	사업소명 :	
[회사대표]	직 위 :		[한전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별표 15]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 분	내 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에 필요한 배전 기능인력의 (가공배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경력관리시스템(Career-Track) 구축 및 자격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자격증번호, 무정전 편조인원, 소속 협력회사, 위치정보
	선택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전기능인력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만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까? (해당란에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 분	내 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시공업체,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 및 배전 기능인력 양성 지정교육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별 공사 투입 및 시공실적 경력관리 체계 구축** **·기능자격 경력수첩 발급 및 종합관리** **·기타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자격증번호, 무정전 편조인원, 소속 협력회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전기능인력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만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해당란에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확인 **성명** _____ **(서명)**

[별표 16]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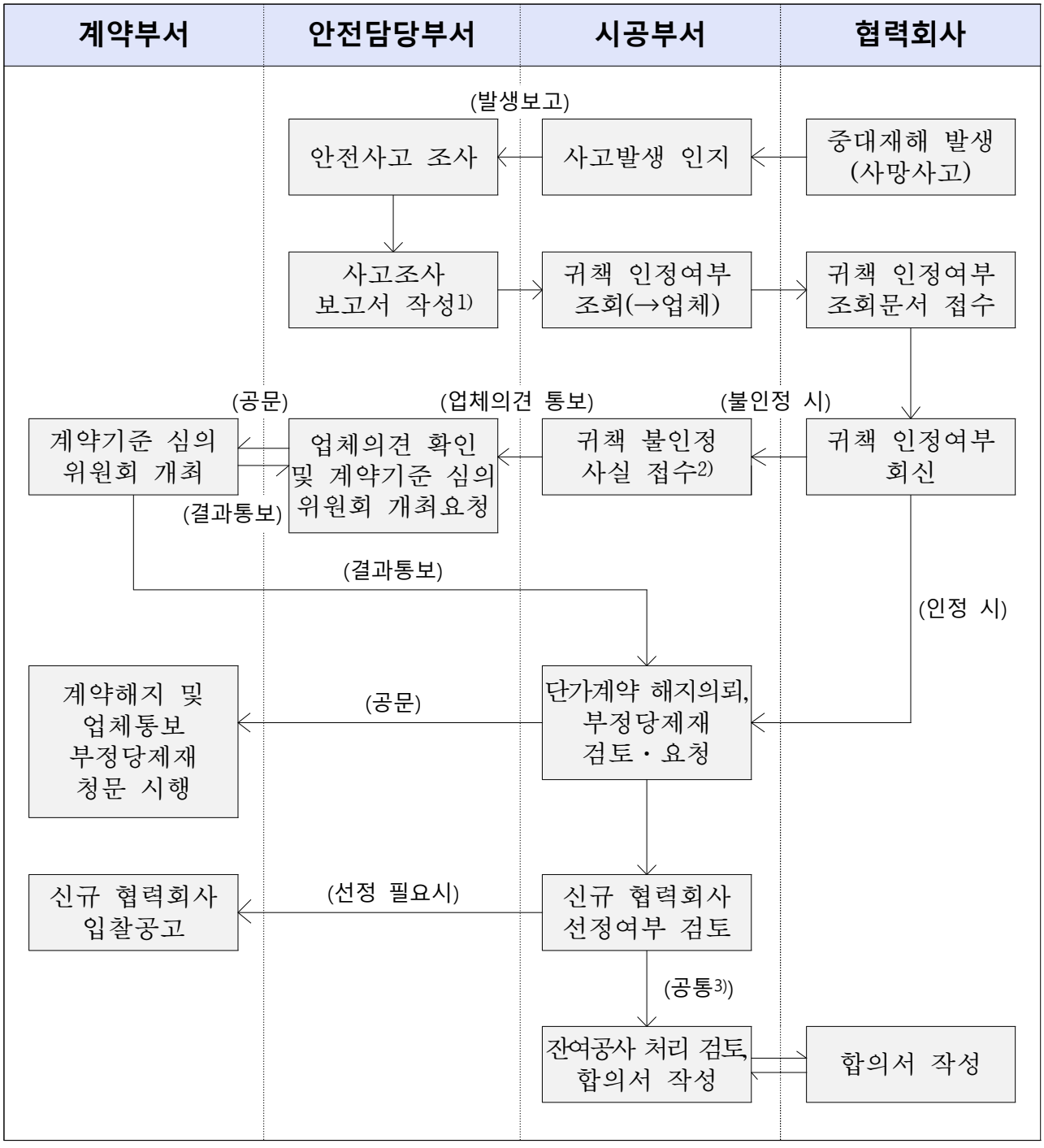

1) 사고조사 보고서는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에 의한 상보를 의미한다
2) 이의사실 접수 이후, 안전담당부서에 업체의견을 즉시 통보하고, 안전담당부서는 내용 확인후 지체없이 심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3) 협력회사 신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

1.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결정 절차

1.1 안전담당부서는 배전공사 이행 과정에서 협력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에 따른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1.2 시공부서는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사고발생 경위, 협력회사의 귀책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 시공부서는 협력회사에 계약해지 예정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력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부서로 계약해지를 의뢰한다.

1.4 이의신청에 대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한 계약기준심의 위원회에서 계약해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협력회사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1.5 '1.4항' 의 경우 계약해지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배전공사의 정상적인 수행 또는 안전확보가 객관적으로 어렵거나 배전공사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기준심의 위원회 참석위원 2/3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6 다만,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협력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17]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사안별로 개별 운영되던 기존의 각 심의위원회를 단일의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본부별 협력회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사항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2.1 추정도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

2.2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2.3 타절준공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4 협력회사 상근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2.5 기타 필요사항 (지역본부 협력회사 운영 관련 중요 사항 등)

3. 위원회의 구성

3.1 위원장 : 전력사업처장

3.2 위 원 : 사업소 2직급 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5인 이상, 홀수) 단, 심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장을 아래와 같이 필수로 참여시켜야 한다.

3.2.1 추정도급액 조정,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시 : 계약부서장, 해당 사업소 공사부서장*

3.2.2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협력회사 상근인력 조정 시 : 해당 사업소 공사부서장*

* 단, 3급사업소 중 배전 2직급 사업소장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배전 3직급 1인이 참석하고, 심의위원 구성은 제외

3.2.3 다수 심의안건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1), 2)의 필요인원을 모두 만족하도록 구성한다.

3.3 간 사 :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 차장

4. 위원장의 임무

4.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4.1.1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안건 및 자료의 제출, 위원회의 출석, 설명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4.1.2 위원장 부재시에는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개의 및 의결

5.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5.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3 추정도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6. 심의내용

6.1 추정도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

6.1.1 해당 사업소의 추정도급액 조정 사유 및 조정금액의 적정성

6.1.2 추정도급액 조정에 따른 협력회사 수량 및 공사권역 조정의 공정성

가) 공사권역 통합 또는 분리의 타당성

나) 공사권역 조정에 따른 해당 사업소 합의 여부

다) 원거리 공사권역 통합에 따른 협력회사 업무수행 곤란 여부 등

6.2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6.2.1 공사권역별 협력회사간 수주편차 분석 및 발생 원인

6.2.2 지역전담 기준금액의 상·하향 조정 금액의 적정성

가) 기준금액 조정에 따른 해당사업소 의견 검토사항

나) 기준금액 조정에 따른 협력회사 업무수행 곤란 여부 등

6.2.3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적용 기준일의 확정

6.3 타절준공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3.1 협력회사 이견이 있는 타절준공 대상건의 타절준공 여부 최종 결정

6.3.2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유형	판정 방법
신규	• 고객 송전 일정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 시공통보까지 공사 진행 단, 송전 일정이 공사일정과 여유가 있을 경우는 중단(타절)
배전 선로 이설	• 전액 당사부담과 고객부담공사, 이설 긴급성에 따라 판단 - (전액 당사 부담)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 처리하여 준공 - (전액 또는 일부 고객부담) 기존 협력회사에서 시공 단, 전액 당사부담공사 중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이설이 긴급하여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보수, 운영	• 공사타절 검토 시점의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준공처리 단, 위해개소 긴급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6.4 협력회사 상근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6.4.1 협력회사별 추정도급액 및 발주실적(계약도급비)의 편차 분석 및 발생 원인

6.4.2 익년도 발주예상 실적 파악 및 상근인력 조정인원 적정여부 등

가) 익년도 배전공사 예상물량 적정 여부, 상근인력 조정의 필요성

나) 상근인력 증감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① 발주물량 증가 예상 시 : 상근인력 충원 가능여부에 대해 협력회사 사전 협의

② 발주물량 감소 예상 시 : 협력회사가 상근인력 보유기준 감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수취 후 적정성 검토

7. 의결결과 통보

7.1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7.1.1 추정도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관련부서 및 2차사업소

7.1.2 그 외의 사항 : 관련부서, 2차사업소 및 해당 협력회사

7.2. 조정결과에 대한 협력회사 통보는 서면(공문)으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8. 비밀의 유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회사의 경영정보나 내부 심의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